

정의

조선 후기의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州)이고, 효자 신심(申鎔)의 아버지이고, 효자 신협(申鋏)의 숙부이다.

활동사항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어머니가 병환이 나자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에 빌었으며,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어머니 병간호를 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함이 지나쳐 곡을 하다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최질을 풀지 않고 집상(執喪)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크게 알려져 조선조 숙종 때에 정려(旌闈)되었다.

1636년 (인조 14) 적병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들 신심이 부모를 해치지 말도록 적병에게 애원하여 무사하였고, 그 후 그의 처가 병환이 들자 아들 신심이 손가락을 끊어 어미를 구출하자 국가에서 효자로 정려하였다.

효자로 정려되었던 신협은 그의 조카이다. 한 집안에서 3명의 효자가 나와 나라에서 함께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상훈과 추모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三孝閣)을 지어 추모하고 있다.

청원 아주신씨 삼효각(淸原鵝洲申氏三孝閣)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리(佳陽里)에 있는 효자각으로 아주신씨(鵝洲申氏) 3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아주신씨(鵝洲申氏) 3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655년(효종 6) 효자 신협(申鋏)의 효자각이 세워지고, 1683년(숙종 9) 효자 신지익(申之益)과 그의 아들 효자 신심의 효자각이 세워졌다. 1703년(숙종 29) 3인의 효자각을 합설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752년(영조 28)에 중건하고 1972년에 보수한 것이다.

신지익(申之益)은 모친의 병환에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에 빌었으며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드리고, 정성을 다하였다. 초상 때 애통함이 지나쳐 울며 곡하다가 기절하였으며 질대를 풀지 않고 상례를 치렀다. 숙종(肅宗) 때에 정려되어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三孝閣)이 현재 있다.

그의 아들 신심(申鑣)은 병자호란 때 적병을 만나게 되어 몸으로써 부모를 막아 지키며 부모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애원하니 청나라 병사도 차마 해하지 못했다. 또 모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베어 구한 일도 있어 숙종 때에 정려되었다. 신지익의 조카인 신협(申鉉)은 모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리고, 효성을 다하여 효종 때에 정려되었다.

정면 2 칸, 측면 1 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사면을 홍살로 막고 안에는 3인의 정문 편액을 걸었다. 또한 1686 년(숙종 12)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가 쓴 아주신씨선세사실(鵝洲申氏先世事實)과 1703 년(숙종 29)에 장암(丈巖) 정호(鄭澹)가 지은 삼효사실기(三孝事實記), 그리고 1762 년(영조 38)에 송가상(宋可相)이 지은 삼효려중수기(三孝閣重修記)가 걸려 있다. 밖에는 '삼효려(三孝閣)'라는 현판이 달려 있다. 지금은 주위에 담장을 쌓고 철문을 달았다.

청원 검암서원(淸原儉巖書院)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屏巖里)에 있는 조선시대 서원.

1694 년(숙종 20)에 조헌(趙憲)을 주향하고, 한일휴(韓日休), 지여해(池汝海), 신지익(申之益), 변상회(卞尙會), 송국헌(宋國憲), 신영식(申永植), 이동형(李東享), 박문고(朴文古), 연최적(延最積)을 배향한 서원이다. 1871 년(고종 8)에 철폐된 것을 1958 년 유림에서 다시 세우고, 신응태(申應泰)를 추향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958 년에 중건, 1960 년에 중수하고 1985 년에 보수한 것이다. 정면 3 칸, 측면 1 칸 반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 내부는 통간 양회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퇴를 두었으며, '충효사(忠孝祠)'라는 편액을 걸었다. 마당 앞에는 '검암서원(儉巖書院)'이라는 현판을 단 삼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신지익 상소문)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8 일 경진 2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유학 신지익이 이이첨의 교활한 정상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幼學 **申之益** 上疏, 極論 **李爾瞻** 凶狡情狀。【時, **任就正** 等, 攀緣宮掖, 與 **爾瞻** 聲勢相敵, 互相傾軋。 **全有亨** 乃就正之門客, 而 **申之益**, **有亨** 之壻也。 其疏出於 **有亨** 云。】

유학(幼學) **신지익**(**申之益**)이 상소하여 **이이첨**(**李爾瞻**)의 흉악하고 교활한 정상을 극심하게 논핵하였다. 【당시의 **임취정**(**任就正**) 등이 궁궐에 연줄이 있어서 명성과 세력이 **이첨**과 대등해지자 서로 알력이 있었다. **전유형**(**全有亨**)은 바로 **취정**의 문객이고, **신지익**은 **유형**의 사위이다. **신지익**의 상소는 **유형**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9 일 신사 3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양사에서 이이첨을 무고한 신지익의 처벌에 대해 합계하다

○(兩司) 司憲府司諫院合啓曰: "伏見 **申之益** 上疏, (大概) 以兇狡二字, 誣陷遠接使 **李爾瞻**。 其原疏雖未得見, 至以兇狡爲言, 則其構捏罔極之狀, 據此可知。 **李爾瞻** 精忠勁節, 可質神明, 而爲國任怨, 終始不撓。 護逆謀逆之輩, 常欲殺之, (而乃已者久矣。) 則今日妖疏之出, 固不足怪也。 第念(**李**)**爾瞻**, 既受僉接之任, 纔出國門(之外), 賊弩遽發, (狙擊至此, **李**)**爾瞻** 若見此疏大概, 必待罪中路, 去留狼狽。 債事之患爲如何哉? 況近來天朝之於我國, 多有疑訝之事, 詔使越江之日, 未及迎候, 則前頭國家之憂, 有不可勝言。 其誣陷忠良生事國家之罪, 不可不懲, 請先治之益之罪, 以爲妖賊逞兇者之戒。" 答曰: "徐當發落。"

양사가 합계하기를,

"삼가 **신지익**의 상소를 보니, <그 대강의 내용은>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두 마디로 원접사 **이이첨**을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소(原疏)는 비록 보지 못했으나 심지어 흉악하고 교활하다고 말하였으니, 터무니없이 모함한 정상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이첨**은, 충성스럽고 곧은 절개는 신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이며, 나라를 위해 원망을 받으면서도 시종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적을 두호하고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항상 그를 죽이고야 <말려고 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요망한 상소가 나온 것은 그리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첨**이 이미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받고 이제 막 도성문을 나서자마자 그를 해치는 말이 대번에 일어나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대니> **이첨**이 만약 이 상소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도중에서 대죄하여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낭패스러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 근심을 어찌하겠습니까. 더구나 근래에 중국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이 많은데, 조사가 강을 건너는 날 때에 맞추어 마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라의 근심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무고하여 나라에 어려운 일을 만든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지익의 죄를 다스려서 요망하고 흉악한 적도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9 일 신사 4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급한 계사 외에는 올리지 말라 전교하다

○以祕密答政院曰: "李爾瞻既受命下去, 有何可疑之事, 而煩瀆於靜攝之中乎? 予近因多事, 啓辭日日紛沓, 病勢尤劇。 天使當前, 出待無路, 予竊悶焉。 限今月不急啓辭, 一切勿爲, 使予靜調。 雖一儒生陳疏, 有何不得察任之事乎? 只勿出朝報。 所謂別樣處置, 將欲何爲? 願聞之。" (【申之益事, 是後連啓。 是不從。】)

비밀로 정원에 답하기를,

"이이첨이 이미 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무슨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고 조용히 조섭하는 중에 번거롭게 하는가. 근래에 일이 많고 계사가 날마다 답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중국 사신이 당장 나오게 되었는데도 나가서 대접할 길이 없어 내가 근심하고 있으니, 이달 안에는 급한 계사가 아니면 일체 올리지 말아서 나로 하여금 조용히 몸조리를 할 수 있게 하라. 비록 한 유생이 상소를 올리기는 했으나 직무를 살피지 못할 일이 무어 있겠는가. 다만 조보에만 나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른바 별도의 처리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듣고 싶다." 하였다. 【<신지익의 일을 이후에도 연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9 일 신사 5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신지익의 죄를 다스리고 원점사를 돈유할 것을 청하다

○兩司再 合啓, 請曰治 申之益, 只且下諭 予遠接使安心察任, 祕密答曰: "徐當發落。" 【是後連啓, 不從。】

양사가 재계하여, 신지익의 죄를 다스리고, 원점사에게 하유하여 안심하고 임무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비밀리에 답하였다. 【이후에도 연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0 일 임오 5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합계하여 신지익의 일을 입계하자 비답을 봉해 내리다

○(合啓 申之益事入啓, 批答封下。)

<합계하여 신지익의 일을 입계하니, 비답을 봉하여 내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0 일 임오 6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홍문관이 신지익의 처벌과 이이첨의 돈유를 상차하자 번거롭게 하지 말라 비답하다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양사가 아뢴 사항을 흔쾌히 따라서 간악한 흉적의 죄를 다스리고, 또 정원에서 아뢴 대로 특별히 명을 내려 하유해서 이이첨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임무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원과 양사에 하유하였다. 조섭하는 중에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0일 임오 7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신지익과 이이첨의 일에 대해 합계하자 비답을 봉해 내리다

○(合啓: "臣等將 申之益 事兇疏事, 昨已陳啓, 而自上以徐當發落爲批, 臣等悶鬱焉。 夫徐當發落者, 在可否從容處置之謂也。 卽者詔使之行既已過關, 白牌之報, 朝暮必至。 雖使 李爾瞻 作速馳進檢飭, 一路整頓, 諸具猶慮, 其窘迫生事之患, 況 李爾瞻 纔出國門, 遭此妖疏, 未及辨明之前, 萬無仍往之理。 李爾瞻 之見斥妖豎, 被誣罔極, 固不可言。 迎候江上, 若失其期, 則致疑王人, 貽禍我國, 未必不由於此也。 今日所關, 莫此緊急, 是豈徐當發落從容處置之事也? 一失事機, 後悔莫及。 請亟治 之益 構陷忠良媒孽國家之罪, 且溫諭 爾瞻 安心, 前往及期儻接, 俾無僨事之患。" 批答封下。)

<합계하기를,

"신지익이 올린 흉악한 상소문제를 가지고 신들이 어제 이미 진계하였습니다만 상께서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은 근심스럽고 답답합니다. 대개 천천히 결정한다는 것은 가부를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의 행차가 이미 관문을 지났으니 백패의 보고가 조만간 반드시 당도할 것입니다. 비록 이이첨으로 하여금 서둘러 달려가서 일로(一路)를 검칙하고 여러가지 도구들을 정돈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다급해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더구나 이이첨이 막 도성문을 나서자마자 이러한 요망한 상소를 만났으니 분명하게 판명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이첨이 요사스런 소인배들에게 배척을 입고 망극하게 무고를 당하는 것은 굳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상(江上)에서 사신을 영접하는 기일을 만약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의 의심을 살 터이니 우리 나라에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관계된 바가 이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천천히 결정하고 조용히 처리할 일이겠습니까. 일의 기미를 한번 놓치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되고 어진 신하를 모함하여 나라에 재앙을 끼치려 한 지익의 죄를 속히 다스리고, 이첨에게 따듯하게 하유하여 안심하고 미리 가서 기일에 맞추어 영접하게 하여 일을 그르치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 비답을 봉해서 내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1일 계미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함께하여 신지익의 일을 입계하자 비답을 봉해 내리다

○辛酉閏二月十一日癸未。(合啓申之益事入啓, 批答封下。)

<함께하여 신지익의 일을 입계하니, 비답을 봉해서 내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2일 갑신 2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유학 신지익이 비밀리에 재차 상소하다

○幼學申之益上祕密上再疏。

유학 신지익이 비밀리에 재차 상소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4일 병술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대사헌 유대건이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大司憲俞大建啓曰: "申之益請罪(事), 非臣之意。 原疏未下, 不可論啓事, 言于同僚, 終不得止之, 至於連啓, 臣之罷軟不職之失極矣。 請命罷斥。" 答曰: "勿辭。"

대사헌 유대건(俞大建)이 아뢰기를,

"신지익을 죄주자고 청한 <사안은> 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소가 내려오기 전에는 논계할 수 없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말하였으나 끝내 저지하지 못해 연계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나약하여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큼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4일 병술 7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장령 곽천호가 이원길의 상소를 들어 사직을 청하다

○(掌令郭天豪啓曰: "臣伏見李元吉上疏, 大概以戊午式年罷榜事, 徑先停啓, 攻擊臺諫。" 原疏未下, 雖未詳其措語之如何, 而苟有人言, 則不可一日在職。 而大司憲俞大建以申之益請罪事, 非臣之本意。 原疏未下, 不可論啓事, 言于同僚, 終不得止之至於連啓等語, 引而歸咎。 臣何敢自謂無失, 晏然在職? 以此以彼, 勢難仍冒, 請命遞斥。")

<장령 곽천호(郭天豪)가 아뢰었다.

"신이 삼가 이원길의 상소를 보니, 그 대강의 내용은 무오년 식년시 때 급제자를 발표한 방을 취소하자는 논계를 지레 정계하였다는 이유로 대간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원 소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으므로 비록 그 말투가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진실로 남에게 비난을 받음이 있으면 하루도 직책에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사헌 유대건이 '신지익의 죄를 청한 일은 신의 뜻이 아니었다. 원 소가 내려오기 전에는 논계할 수 없다고 동료에게 말했으나 끝내 저지하지 못해 연계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말을 끌어다가 허물을 돌렸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여겨 태연히 직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형편상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려우니, 신을 체직하소서.>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8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집의 임건이 체직을 청하다

○(執義林健啓曰: "頃日申之益疏辭, 大概'構陷受命在外之臣, 幾於壞敗國事.' 臣亦參於陳啓之列, 而未見原疏, 故相議姑停矣。 今見大司憲俞大建避嫌, 臣不可在職。 昨日伏見李元吉上疏, 大概有'戊午式年所啓, 不待發落, 收議之下, 臺諫徑先停啓, 所在指目, 而恬不知恥'等語。 戊午式年殿試唱榜擇日啓下之後, 兩司相議停啓云, 而臣之子亦參其榜。 臣雖無狀, 豈容是非可否於其間乎? 臣雖驚劣, 職是言責, 被人醜詆, 不可仍冒, 請命遞斥。")

<집의 임건(林健)이 아뢰었다.

"지난날 신지익이 올린 상소의 내용은, 그 대개가 명을 받아 밖에 나가 있는 신하를 모함에 빠뜨려 거의 나라의 일을 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도 진계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원소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의하여 잠정적으로 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사헌 유대건이 피험한 내용을 보니, 신은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가 이원길이가 올린 상소를 보니, 그 대강의 내용에 '무오년 식년시 건에 대한 계사를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의논을 거두라는 하교가 내려지자마자 대간은 지레 정계하였으며, 지목한 중에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무오년 식년시의 전시(殿試)의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을 내거는 날짜를 계하한 뒤에 양사가 상의하여 정계하였다고 하는데, 신의 아들도 그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찌 그 사이에 시비와 가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용렬하지만 직책이 언관으로서 남에게 추한 비방을 입었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9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대사간 윤인이 체직을 청하다

○(大司諫尹訥啓曰: "日伏見李元吉疏, 大概以'徑先停啓, 各牽私情'等語, 攻擊臺官, 臣亦臺官之一也。 雖無循私用情之事, 而被人醜詆, 勢難仍冒。 且申之益原疏雖未啓下, 而大概已出朝報, 則遠接使臣李爾瞻必待罪中路, 不得前進。 其於儼接莫大之事, 恐有顛倒窘迫之患, 故與憲府相議合啓矣。 卽見大司憲俞大建引避之辭, 臣竊怪焉。 當初初啓, 則兩司同議, 爲之連啓, 則大建主張爲之, 而及其引避也, 反以非臣之意, 歸咎於他人。 其前後反覆, 固不足較, 而既被元吉之深斥, 決不可在職, 請命遞斥。")

<대사간 윤인이 아뢰었다.

"신이 삼가 이원길이가 올린 상소를 보니, 대강의 내용은 '지레 정계하였고, 각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렸다.'는 등의 말로 대관(臺官)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신도 대관의 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사정을 쓴 일은 없으나 남에게 추한 비방을 입었으니 형편상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지익이 올린 원 소가 아직 계하되지는 않았으나 대강의 내용이 이미 조보를 통해 나갔으니, 원접사 이이첨은 반드시 도중에서 대죄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신을 접대하는 중대한 일이 엉망이 되고 군색해질 우려가 있겠기에 헌부와 상의하여 합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헌 유대건이 인피한 내용을 보건대 신은 저으기 괴이하기만 합니다. 당초에 초계(初啓)는 양사가 동의하여 하였던 것이고, 연계는 대건이 주장하여 한 것인데 급기야 인피하면서는 도리어 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여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전후로 말을 뒤집는 것은 진실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만, 이미 원길에게 심한 배척을 당했으니 결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10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정언 민심이 체직을 청하다

○(正言閔棨啓曰: "臣於往年四月冒居本職, 而當戊午式年停啓之論, 以同生弟參於其榜, 故呈告不與, 又於頃者停啓之時, 臣未及除授本職, 其於前後停啓之論, 不相干預。 而顯被李元吉之醜詆, 勢不可仍冒。 且申之益元疏, 雖未啓下, 見其大概, 以兇狡二字, 斥李爾瞻。 爾瞻方爲遠接使, 必待罪於中路, 其於僉接之事, 恐有顛倒未及之患, 故與憲府相議合啓矣。 今見大司憲臣俞大建引嫌之辭, 臣竊怪焉。 當初初啓, 則兩司同議爲之, 連啓則大建主張爲之, 而及其引避也, 反以非臣之意, 歸咎於他人。 其前後反覆, 固不足較, 而既被元吉之深斥, 決不可在職, 請命遞斥。")

<정언 민심이 아뢰었다.

"신은 지난해 4 월에 본직에 임명되었는데, 무오년 식년시 문제를 정계하자는 논의를 할 때에는 친동생이 급제자를 발표한 방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정고(呈告)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지난번에 정계할 때에는 신이 아직 본직에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전후로 정계하자는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원길에게 드러내놓고 비방을 당했으니 형편상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지익이 올린 원 소는 비록 계하되지 않았으나 그 대강의 내용을 보니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두 글자로 이이첨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이첨은 지금 막 원접사가 되었는데 반드시 도중에서 대죄할 터이니,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엉망이 될 우려가 있겠기에 헌부와 상의하여 합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사헌 유대건이 인피한 내용을 보건대 신은 괴이하기만 합니다. 당초 초계는 양사가 동의하여 한 것이고, 연계는 대건이 주장하여 한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인피하면서는 도리어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하여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전후로 말을 달리하는 것은 진실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길에게 심한 배척을 입었으니 결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11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정언 박광선이 체직을 청하다. 사직 상소를 모두 불허하다

○(正言朴光先啓曰: "臣伏見李元吉上疏, 大概有'不糾弄法'等語。 臣南中人也, 入來未久, 知識亦罕, 有何容私虧失於其間? 而顯被詆斥, 至於此極, 何敢自以爲無失, 而偃然仍冒乎? 且申之益元疏, 雖未啓下, 而其大概已出朝報, 則遠接使臣李爾瞻, 必於中路席藁待罪, 不得前進矣。 若於此時, 詔使渡江, 則莫大僉接之事, 恐有中道窘迫之患, 相議於憲府, 仍爲合啓之舉。 今見大司憲臣俞大建引避之辭, 臣竊怪焉。 兩司同議既已爲之, 及其引避, 反以非臣之意, 歸咎於他人, 其前後反覆之態, 固不足較。 而既被元吉之深斥, 決難在職, 請命遞斥。" 答大司憲曰: "勿辭。" 答大司諫、執義以下曰: "勿辭, 退待物論。")

<정언 박광선(朴光先)이 아뢰기를,

"삼가 이원길이가 올린 상소를 신이 보건대, 대강의 내용에 '법을 농락하였고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은 남도 사람으로 관직에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움을 용납하여 일을 그르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극심하게 드러내놓고

배척당하였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여겨 태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신지익**이 올린 원 소는 비록 계하되지 않았으나 그 대강의 내용이 이미 조보에 나갔으니 원접사 **이이첨**은 반드시 도중에서 석고 대죄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때에 조사가 강을 건넌다면 사신을 접대하는 중대한 일이 중도에 균색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부에 상의하여 그대로 합계하였던 것인데, 지금 대사헌 유대건이 인피한 내용을 보건대 신은 괴이하기만 합니다. 양사가 동의하여 실행해 놓고 급기야 인피하면서 도리어 '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전후로 말을 뒤집은 태도는 참으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길에게 심한 배척을 당했으니, 결코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대사헌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대사간과 집의 이하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13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지평 성하연이 체직을 청하다. 사간과 지평의 사직을 불허하다

○(持平 **成夏衍** 啓曰: "臣伏見 **李元吉** 上疏, 大概以戊午式年停啓之事爲言。 臣忝此本職, 日月不多, 停啓之論, 既不得與焉, 則有何可否相糾之事乎? 且至以'虧失體貌、弄法蔑上'等語爲斥臣, 不可晏然仍冒。 而卽見大司憲 **俞大建** 引避之辭, 則有曰: '**申之益** 請罪事, 非臣之意, 原疏未下, 不可論啓事, 言于同僚, 終不得止之, 至於連啓。' 云。 當初合啓也, **大建** 以長官, 既定歸一之論, 及其連啓也, 多費辭說主張連啓之意。 簡通尚在焉, 可誣也? 今乃反覆其言, 歸咎諸僚, 前後所爲, 判若二人之手段, 其心所在, 臣實未曉。 被斥於 **元吉**, 見陷於同僚, 決不可一日在職, 請命罷斥。" 答司諫、持平曰: "勿辭。")

<지평 **성하연(成夏衍)**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이원길**이 올린 상소를 보건대, 그 대강의 내용은 무오년 식년시의 문제를 정계한 일로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본직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계하자는 논의에 이미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가부를 논하여 다투겠습니까. 그리고 '체모를 그르치고 법을 농락하고 임금을 멸시하였다.'는 등의 말로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태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헌 유대건이 인피한 내용을 보건대, '**신지익**을 죄주자고 청한 일은 신의 뜻이 아니었다. 원 소가 내려오기 전에는 논계할 수 없다는 것을 동료에게 말하였으나 끝내 저지하지 못해 연계하기에 이르렀다.' 하였습니. 당초 합계할 때에 대건이 장관으로서 이미 논의를 하나로 통일하여 정하였고, 연계할 때에 이르러서는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연계해야 한다는 뜻을 주장하였습니다. 간통(簡通)했던 서류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을 뒤집어 허물을 여러 동료들에게 돌려서 전후로 하는 행동이 마치 판이하게 두 사람의 수단인 것처럼 하니, 그의 의도를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길에게 배척을 당했고 동료에게 속임을 당했으니 결코 하루도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사간과 지평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4 일 병술 14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대사간 윤인 등이 유대건으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비답하다

대사간 윤인, 집의 임건, 사간 채승선, 장령 곽천호, 지평 성하연, 정언 박광선·민심이 모두 유대건이 신지익에 대한 논의를 먼저 꺼내놓고 뒤에 말을 뒤집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이에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5 일 정해 2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이원길의 상소를 들어 부응교 한영이 체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부응교 한영(韓詠)이 아뢰기를,

"보잘것 없는 소신이 청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도움이라곤 티끌만큼도 드리지 못했었기에 늘상 전전공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삼가 이원길이 올린 상소를 보니, 그 대강의 내용은 심지어 '삼사가 법을 농락하고 임금을 멸시하였다.'는 등의 말로 극도로 모함하고 배척한 것이었는데, 신은 가슴이 아픕니다. 신지익은 명을 받은 신하를 함정에 빠뜨려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원길은 삼사의 관원을 공격하여 공론을 억눌렀는데, 수컷이 부르면 암컷이 화답하듯 서로 이어 소장을 올렸으니 은밀히 모의하고 비밀히 계책을 꾸민 것이 너무도 참혹합니다. 무오년 식년시 때 급제자를 발표한 방을 취소하자는 논의는 삼 년이나 되도록 오래 끌었지만 끝내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날을 받아 아뢰라는 전교가 위에서 결정되었으니, 양사가 정계한 것은 참으로 근거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괴물 같은 자가 온갖 방법으로 엮어매고 이따위 말들을 주워모아서 반드시 모두 때려잡은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병들었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이에 가깝습니다. 법을 농락하고 임금을 멸시한 죄가 이 어떤 죄입니까. 신은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결코 하루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은 그 당시의 시관으로서 비록 일호도 사사로움은 없었으나 이미 요망한 소장으로 배척을 당했으니 더욱 태연하게 직책에 있으면서 양사를 처치할 수는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한희 이하와 한영의 계사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전한 한희(韓禧), 부응교 한영(韓詠), 교리 이광윤(李光胤), 부수찬 윤성임(尹聖任) 등이, 이원길이 삼사의 죄를 다스리라고 청했기 때문에 처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광윤은 영남 사람으로 나이가 60 이 다 되었는데도 진퇴의 의리를 몰라 용렬하게 남을 따라하기만 하였다. 일찍이 옥당에서 숙직할 때에 우거살이가 매우 가난하여 하루는 밥을 먹지 못하였으므로 배고파 쓰러졌는데, 젓비린내 나는 젊은 동료 조유선(趙裕善)이 밥을 사발 뚜껑에 조금 덜어서 먹였다. 사람들이 그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비웃었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5 일 정해 4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신지익의 상소를 들어 대사헌 유대건이 체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大司憲俞大建啓曰: "臣素以無狀, 待罪憲長。頃見申之益上疏, 大概則以兇狡二字, 橫加於遠接使李爾瞻。'當此詔使已迫續接爲急之日, 生事於上國、貽禍於我邦。雖極痛惋, 而臣意則欲待原疏發落, 極盡論啓, (尙未晚也,) 而言無輕重。此臣之所以引避者, 別無他意(於其間), 而辭不達意, 以致兩司多官, 攻臣不遺餘力, 臣竊哂之。(昨日)呈告政院, 再次不捧, (今日再呈政院又不捧,) 臣之情事, 極爲狼狽。(靜攝之中, 連日來啓, 尤極惶恐, 而)既被詆斥, (不可仍冒,) 請(亟)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대사헌 유대건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자질로 헌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지익**이 올린 상소의 대강 내용을 보니,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두 마디로 원접사 **이이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날이 곧 닥쳐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다급해진 이러한 때에 중국에는 일이 생기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화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극도로 통분할 일이지는 하지만 신의 생각에 원 소가 처리되기를 기다려 극진하게 논계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었지> 말에 경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인피한 이유였고, <그 사이에> 별다른 뜻은 없었는데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양사의 많은 관원이 모든 힘을 다하여 신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은 삼가 어처구니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어제> 정원에 사직서를 올렸으나 봉입하지 않았고, <오늘 재차 정원에 사직서를 올렸으나 또 봉입하지 않았으니> 신의 정상이 매우 낭패스럽습니다. <조섭하시는 중에 연일 와서 아뢰니 더욱 황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비난을 입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6일 무자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양사의 관원들을 모두 체차할 것을 명하다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양사가 모두 인협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년 이래로 과장이 엄격하지 못하여 사사로움을 따르고 공론을 멸시하는 폐단이 자주 있었는데, 심지어 무오년 식년시의 강경시 때에는 물의가 물끓듯 하여 <공론이 더욱 격렬하였습니다.> 혹은 자신이 감시관이었으면서 급제자를 발표한 방을 취소하자는 논계에 동참하기도 하였고, 혹은 지목한 중에 있지는 않았으나 정계하기 전에 사직서를 내기도 하였으니, 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혐의를 피했던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신이 삭제하자는 논의를 올려 상께서 조사하여 밝히려는 전교를 내리셨으나 3년이 되도록 질질 끌어 해결될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조가 아뢰어서 특별히 날을 받으라는 분부가 내려졌으니, 양사가 정계한 것은 진실로 근거한 바가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나가 있어서 <조정 의논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새로 대간에 임명되어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양사의 많은 관원은 실지로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거친 유생의 함부로 하는 말을 어찌 족히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신지익**을 죄주자는 거조는 이미 <양사가> 동의한 것에서 나왔고, 합계나 연계도 조금도 의견 차이가 없었으니, 처음에는 합의하였다가 끝에 가서 어긋난 것은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장이 되어 <주장하여 초계를 만들어 놓고 인피할 때에는> 세 번씩이나 그 말을 변경하여 사태를 관망하면서 태도를 뒤집었으니 연관의 체모를 크게 잃었습니다. 지평 **정결(鄭潔)**, 장령 **곽천호(郭天豪)**, 집의 **임건(林健)**, 대사간 **윤인(尹訥)**, 정언 **민심(閔澁)**, **박광선(朴光先)**, 사간 **채승선(蔡承先)**, 지평 **성하연(成夏衍)**은 모두 출사시키고, 대사헌 **유대건**은 체차하소서."

하니, 비밀리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대건**이 원 소가 내려지기를 기다려 논계하려고 했던 것은 법관으로서 일을 논하는 체면을 잘 알았던 것이다. 원 소가 내려지기 전에 어찌 곧장 먼저 논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이첨**의 일은 위에서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할 일이지 실로 대간이 감히 지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첨**이 이미 명을 받아 밖에 있으니 그의 말은 바 의리는 오직 군명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야 할 뿐이다. 그가 또한

어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는가. 양사가 조섭하는 중에 지레 번거롭게 한 것은 크게 일의 체모를 잃은 것으로 전도시킨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옥당은 단지 대사헌의 체직만을 청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양사의 관원을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7 일 기축 1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정언 윤성임이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辛酉閏二月十七日己丑正言尹聖任啓曰: "(螻蟻賤臣, 誤恩聖朝, 揚歷清班, 七年于茲。 自顧驚劣, 已極兢惕。 況此新命又出夢寐之外, 驚惶感勵, 所當職思, 其居圖報涓埃, 第) 臣於昨日, 忝在玉堂, 兩司俱避, (理宜處置, 而觀其引嫌之辭, 實由於) 申之益、李元吉之疏。 臣意以爲, 兩司罷榜停啓請罪之益等事, 雖或有苟且急遽之跡, 若以儒疏徑遞臺諫, 則當此士習澆薄之時, 慮有末流紛擾之端, 故) 臣與校理臣李光胤, 參酌(遞出而)處置矣。 及承聖批有曰: '此處置其可謂識事體乎?' 諦觀筭辭, 果爲乖當。 安有暗於事體而放據言地乎? (既捧嚴旨, 無地自容, 乃於靜攝之中, 敢來瀆擾, 臣之罪戾, 至此尤大。 以此以彼, 決不可晏然, 仍冒)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정언 윤성임이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천박한 신이 전하의 은혜를 입어 청반의 자리를 두루 역임한 것이 어언 7 년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둔하고 무능하여 이미 지극히 두려운데, 더구나 이번에 뜻밖에도 새로 임명을 받았으니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로지 직책을 잘 수행하여 티끌만큼이라도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이 어제 옥당의 직책에 있을 때 양사가 모두 인피하였는데, <이치상 마땅히 처치해야겠기에 그 인피한 내용을 보니 실로 신지익과 이원길의 상소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양사가 급제자를 발표한 방을 취소하자는 논계를 정계한 것과 지익을 죄주자고 청한 것은 비록 구차하고 갑작스러운 자취가 있기는 하나 만약 유생의 상소로 곧장 대간을 체직한다면 선비의 습속이 가볍고 들떠 있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말류에 분쟁이 일어나는 단서가 있게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교리 이광윤(李光胤)과 함께 <체직할 것인지 출사할 것인지를> 참작하여 처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전하의 비답을 받들고 보니, '처치가 일의 체모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차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마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일의 체모에 어두우면서 언관의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엄한 전지를 받들었으니 스스로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조섭하시는 중에 감히 와서 번거롭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큼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결코 태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69 권, 광해 13 년 9 월 28 일 병인 4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영의정 박승종이 과거의 시제를 여러명에게 내게한 진상을 설명하다

○領議政朴承宗上劄曰: 臣以極庸且劣, 承乏鼎軸, 當此艱危之日, 更無絲毫之補, 思欲讓賢, 出於血誠。 聖旨不准, 力疾隨行。 今見臺諫啓辭, 正中臣過。 國無臺諫, 其何以糾官邪、行公法乎? 因此得釋重負, 則雖骨肉相愛, 何以過此? 鼓舞喜甚, 誇詡家人矣。 但今將永退, 焉得無言? 強趨闕下, 寒氣逼骨, 坐如凍蠅, 心火極焰, 幸不至手歐傍人。 至如處置間事, 茫如夢裏, 全不了了, 試記其一二焉。

大提學所出題馬融請代西虜。好則好矣，目今毛都司請兵，勢不克從，正論之人，皆歸咎君相。今若以此爲題，使多士製述，則其必曰：“朝臣則皆欲發兵，特上意不從。”而此題是諷諫之意也，轉相告語，流聞於天將，則畢竟歸咎何地？臣職此深懼，不敢顯言，托以他說，使之改出他題而首擬矣。臣以區區慮微愛君之忠，遭此不測之謗，難辨之目，吁亦數也。至如多官，竝令出題，固是臣之妄作，然亦有前例。壬子年九月二十四日，上臨御瑞葱臺庭試，其時相臣李德馨相議出題，大提學非不在也，招李爾瞻等問題。此固一時相臣廣詢博訪之意，庸何傷乎？對讀官十三人，皆非臣相切者，臣寧容一毫私意於其間哉？臣欲務公道，反被私謗，其亦冤矣。且考較之時，臣承宗、臣弘耆、臣爾瞻鼎坐，使吳靖對讀，臣等何嘗不議於爾瞻，爾瞻亦何嘗不問於臣等？有一文，爾瞻贊之曰：“能用《禮記》文字。”臣從而然之。此則李汝儉之子也，爾瞻安有私情一文，以九泉，斯世爲對，爾瞻抹之，臣亦然之。此則洪恕之文，其妻甥李尙、時恒安敢干預有一文甚拙，而落句有妄發字，臣欲黜之，柳根以爲元數不多，不必強黜。此則洪震之文，而李廷龜、洪霧安得知之？及勘定壯元之際，柳根贊一文，爾瞻亦贊之，遂定三上。臣曰：“壯元矣無乃訓導耶？短句雖有生氣，文斯不佳，恐不合壯元。”柳根、爾瞻，高聲應曰：“必非訓導無疑矣。”餘皆類此，何可盡陳逮乎？罷黜，闕門未開，臣與弘耆、柳根鼎坐守門將廳，柳根戲言曰：“吾爲朴好元亡靈所使，力主安悌之及第。”好元卽安悌之祖父也，以此言之，蓋國何預焉？特以其甥爲執言之地，凡文父爲考官，子爲壯元者皆，出於私情乎？分四所抄呈可合之文，臣等再考，可黜者黜之，可陞者陞之。今若咸聚諸試官，一一問之，則蓋國所上，元不滿六丈，而蓋國所上，有一文，文體紆餘出衆，但方上面與方面皆書之，蓋文多而紙少故也。爾瞻曰：“有表可落。”臣及弘耆，從而黜之。惜其文佳見屈，追問落幅，是柳命立之製也。蓋國所上不盡取，於此較然矣。元數十一人，柳根所上及臣等自取，共遶八九名。蓋國六丈之說，無乃訛傳乎？科舉後毀謗例也。李廷龜子壻同參，近於烏飛梨落。然謂臣等妄取則可也，謂廷龜、蓋國與知，則不亦甚乎？李愷孫與姪一家二人得占，此亦廷龜子壻耶？柳稽之孤寒、進民之卑微，竝皆得參，此亦蓋國容私耶？臣與大提學，未免一場相爭，早知有時人之謗也。臣是自作之孽，宜律以奸小之罪，緣臣之故，橫辱他人之無辜者，亦何哉？嗟呼！臣與爾瞻爲一家相切之人。其文章駢儷，臣嘗稱美，故申之益呈疏，臣奮言於備局，力請仍送儻相之行。及三司齊論，臣密言於趙挺，力沮庭請之發，及至筭言，嶺儒大被憾恨，臣非伸救嶺儒，實爲爾瞻地也。若以張弓挾矢，驅嶺儒爲逆賊，則大獄必起，豈美事哉？日昨以爾瞻題爲副望者，亦慮公議，以爾瞻爲有意而出此題故耳。相愛之深，神鬼可質，一事抵牾，萬端齟齬，莫非臣罪。雖悔曷追？伏乞聖明，削臣官爵，仍命罷榜，以快其心。不勝幸甚。答曰：“省筭，具悉。惟卿既宅首揆，承命試取，則一場之事，在卿進退。況秉心公正，欲洗陋習，則出題雖廣，何傷於救時乎？落榜舉子之言，亦已可笑，身居臺閣，甘心雌和，孰主張是？良可惜也。卿勿介懷，正色鎮定，以清朝議，以濟國體。從前罷榜事，尙未處置，此榜有何云云乎？毋庸更煩。”

영의정 박승중이 상차하기를,

"신은 극히 용렬한 자로서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위급한 날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니, 어진 이에게 양보할 것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어 아픈 것을 참고 따랐습니다. 이제 대간들의 계사를 보니, 바로 신의 허물을 말하였습니다. 나라에 대간이 없다면 어떻게 관원들의 잘못을 살펴 공공의 법을 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신의 중한 짐을 풀게 되었으니, 골육의 사랑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춤을 출듯이 기뻐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자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영원히 물러가려 하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억지로 꺾하에 나왔습니다. 찬 기운이 뺏속까지 파고 들어 마치 얼어붙은 파리처럼 앉아 있었는데, 심화(心火)는 몹시 불타올랐으나 다행히 주먹으로 옆사람을 때리는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처치했던 일들은 까마득한 꿈 속같아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학이 낸 시제는 마융(馬融)이 서로(西虜)를 치자고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제가 좋기는 하였으나, 지금 모 도사가 청병한 것에 대해 형세상 따르지 않자 원칙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군상에게 허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이를 시제로 삼아

선비들에게 글을 짓게 한다면, 그들은 필시 '조신들은 모두 병사를 보내려고 하나 단지 성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풍간(諷諫)의 뜻으로 답할 것이니, 이런 말들이 이리저리 전해져 명나라 장수에게 들어간다면 끝내는 허물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이런 것이 두려워 속셈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핑계대고 시제를 달리 고쳐내도록 해 수의(首擬)하였습니다. 신은 구구하게 미세한 것까지 염려하며 인군을 사랑하는 충성을 다 하였으나, 이런 예기치 못한 비방과 변명도 못할 죄목을 당했으니, 이도 또한 운수라 하겠습니다. 다른 관원에게 시제를 내도록 한 것은 신의 망령된 짓이나 이도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임자년⁰²¹) 9월 24일, 상께서 서총대 정시에 임하셨을 때, 당시 상신인 [이덕형\(李德馨\)](#)이 상의하여 출제했는데, 대제학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이이첨](#) 등을 불러 시제를 물었습니다. 이는 바로 상신으로서 넓게 묻고 두루 살핀다는 뜻이니, 사체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독관(對讀官) 13인은 모두 신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니 신이 어찌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의를 쓰겠습니까. 신은 공도(公道)를 힘쓰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의로 했다는 비방을 받았으니, 원통합니다.

그리고 시권(試券)을 고찰할 때, [박승중](#)·[박흥구](#)·[이이첨](#) 셋이서 앉아 [오정\(吳靖\)](#)으로 하여금 읽도록 하였으니, 어찌 신들과 [이첨](#)이 서로 상의하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글을 보고 나서 [이첨](#)이 예기(禮記)의 문구를 잘 인용했다고 칭찬하기에, 신도 따라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여검\(李汝儉\)](#)의 아들이 지은 것이었는데, [이첨](#)이 사사로운 정리로 그러했겠습니까. 어느 글에는 [구천\(九泉\)](#)과 사세(斯世)를 대어(對語)로 하였는데, [이첨](#)이 지워버리겠다고 하기에, 신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홍서\(洪恕\)](#)가 지은 것이었는데, 그의 처생(妻甥) [이상항\(李尙恒\)](#)이 어찌 관여했겠습니까. 또 어느 글은 아주 서툴게 지어졌고 끝의 귀절에 안 쓸 말을 쓴 것이 있어 신이 빼버리려고 하자, [유근\(柳根\)](#)이 합격시킬 수효가 적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홍영\(洪羹\)](#)이 지은 것이었는데, [이정귀](#)와 [홍방\(洪芳\)](#)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장원을 정하려고 할 때, [유근](#)이 어느 한 글을 칭찬하자, [이첨](#)도 따라 칭찬하기에 마침내 삼상(三上)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장원은 훈도(訓導)가 아닌가. 단구(短句)에는 생생한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 장원은 못 되겠다.'고 하니, [유근](#)과 [이첨](#)이 큰소리로 '분명히 훈도는 아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어찌 다 진달할 것이 있겠습니까. 과거장의 일이 끝나서 나오는데, 궐문이 열려있지 않아 신이 [홍구](#)·[유근](#)과 함께 수문장 청사에 앉았는데, [유근](#)이 농담으로, '나는 [박호원\(朴好元\)](#)의 죽은 녀이 시켜서 그랬는지 [안제\(安悌\)](#)를 급제시키기 위해 힘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호원](#)은 안제의 할아버인데 이런 말을 하였으니, 신국이 어찌 간여했겠습니까. 다만 그의 생질이라고 하여 말하기로 한다면, 아버지가 고관이 되고 아들이 장원이 된 경우가 모두 사사의 정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분정된 네 곳에서 합격될 만하다고 뽑아 올린 글을 신들이 다시 고찰하여 떨어뜨릴만한 것은 떨어뜨리고 올릴 것은 올렸습니다. 당장 여러 시관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물어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국이 올린 것은 6장이 되지 않았으며, 신국이 올린 글 중 어느 한 글의 문체가 뛰어났는데, 뒷쪽과 모서리까지 모두 쓴 것은 글은 많은데 종이가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첨](#)이 '표문(表文) 가운데 떨어뜨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기에, 신과 [홍구](#)가 그 말에 따라 떨어뜨렸습니다. 그 문장이 아름다운데 떨어진 것이 애석해 나중에 떨어뜨린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 바로 [유명립\(柳命立\)](#)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국이 올린 것을 모두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합격된 수효가 11인인데, [유근](#)이 올린 것과 신들이 뽑은 것이 모두 8, 9명입니다. 그렇다면 신국이 6장을 합격시켰다는 말은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뒤에 혈뜬 일은 으레 있는 일입니다. [이정귀](#)의 아들과 사위가 함께 합격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들에게 잘못 뽑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귀](#)와 신국이 참견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심손\(李愷孫\)](#)도 조카와 더불어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합격하였는데, 이들도 정귀의 아들과 사위입니다. 또 외롭고 가난한 자인 유계(柳稽)와 비천한 출신인 진민(進民)이 아울러 합격하였는데, 이들도 신국이 사사로운 뜻으로 합격시켰겠습니까. 신이 대제학과 한바탕 서로 다투었으니, 시인(時人)들의 비방이 있으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짐작하였습니다. 이는 신 스스로 지은 죄이니, 간소(奸小)한 짓을 한 죄에 대한 형률을 받아도 좋지만 신 때문에 무고한 다른 사람까지 옥을 당해야 합니까. 신과 이첨은 한 집안 사람처럼 서로 절친하였습니다. 그의 문장 중 변려문(駢儷文)에 대해 신이 아름답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지익(申之益)이 정소했을 때, 비국에서 힘껏 말해주었으며 이어서 빈상(賓相)으로 보낼 것을 강력히 청하였습니다. 삼사가 일제히 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신이 비밀리 조정(趙挺)에게 말하여 정청(庭請)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였으며, 차차로 영남 유생들의 일을 말하였다가 그에게 크게 원한을 샀으나, 이는 신이 영남 유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은 이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첨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가졌다고 하여 영남 유생들을 몰아다 역적을 만들었다면 필시 큰 옥사가 일어났을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일전에 이첨이 낸 시제를 부망(副望)으로 한 것도 공공의 논의를 염려한 것으로 이첨이 무엇인가 뜻을 두고 시제를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아끼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묻고 늘어지니 이는 모두가 신의 죄입니다. 후회한들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성명께서는 신의 관직을 깎아버리고 파방(罷榜)하라 명하시어 그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영상으로서 시취(試取)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과거장의 모든 일은 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습을 씻어버리려 하였으니, 설령 시제를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시폐를 구원하기 위한 일인데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낙방한 거자들의 말은 가소로운 일인데, 대각에 있는 자가 그런 자들과 어울려 서로 호응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인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경은 개의치 말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조정의 의논을 맑게 하고 국체(國體)를 세우도록 하라. 전일 파방한 것도 아직 처치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과거에 대해 무슨 말들을 하는가.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8일 경진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유학 신지익이 이이첨의 교활한 정상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리다

○庚辰/申之益上疏, 極論李爾瞻兇狡情狀。【時任就正等, 攀緣宮掖, 與爾瞻聲勢相敵, 互相傾軋。 全有亨乃就正之門客, 而申之益, 有亨之壻也。 其疏出於有亨云。】

유학(幼學) 신지익(申之益)이 상소하여 이이첨(李爾瞻)의 흉악하고 교활한 정상을 극심하게 논핵하였다. 【당시의 임취정(任就正) 등이 궁궐에 연줄이 있어서 명성과 세력이 이첨과 대등해지자 서로 알력이 있었다. 전유형(全有亨)은 바로 취정의 문객이고, 신지익은 유형의 사위이다. 신지익의 상소는 유형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9 일 신사 3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양사에서 이이첨을 무고한 신지익의 처벌에 대해 합계하다

○司憲府、司諫院合啓曰: "伏見 **申之益** 上疏, 以兇狡二字, 誣陷遠接使 **李爾瞻**。 其原疏雖未得見, 至以兇狡爲言, 則其搆捏罔極之狀, 據此可知。 **李爾瞻** 精忠勁節, 可質神明, 而爲國任怨, 終始不撓。 護逆謀逆之輩, 常欲殺之, 則今日妖疏之出, 固不足怪也。 第念 **爾瞻**, 既受僉接之任, 纔出國門, 蜮弩遽發, **爾瞻** 若見此疏大概, 必待罪中路, 去留狼狽。 僨事之患爲如何哉? 況近來天朝之於我國, 多有疑訝之事, 詔使越江之日, 未及迎候, 則前頭國家之憂, 有不可勝言。 其誣陷忠良生事國家之罪, 不可不懲, 請先治之益之罪, 以爲妖賊逞兇者之戒。" 答曰: "徐當發落。"

양사가 합계하기를,

"삼가 **신지익**의 상소를 보니,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두 마디로 원접사 이이첨을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소(原疏)는 비록 보지 못했으나 심지어 흉악하고 교활하다고 말하였으니, 터무니없이 모함한 정상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이첨은, 충성스럽고 곧은 절개는 신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이며, 나라를 위해 원망을 받으면서도 시종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적을 두호하고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항상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요망한 상소가 나온 것은 그리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첨이 이미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받고 이제 막 도성문을 나서자마자 그를 해치는 말이 대번에 일어나 이첨이 만약 이 상소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도중에서 대죄하여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낭패스러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 근심을 어찌하겠습니까. 더구나 근래에 중국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이 많은데, 조사가 강을 건너는 날 때에 맞추어 마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라의 근심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무고하여 나라에 어려운 일을 만든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지익의 죄를 다스려서 요망하고 흉악한 적도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9 일 신사 5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신지익의 죄를 다스리고 원접사를 돈유할 것을 청하다

○兩司再啓, 請治 **申之益**, 且下諭遠接使安心察任, 秘密答曰: "徐當發落。" 是後連啓, 不從。

양사가 재계하여, **신지익**의 죄를 다스리고, 원접사에게 하유하여 안심하고 임무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비밀리에 답하였다. 【이후에도 연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0 일 임오 4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홍문관이 신지익의 처벌과 이이첨의 돈유를 상차하자 번거롭게 하지 말라 비답하다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양사가 아뢴 사항을 흔쾌히 따라서 간악한 홍적의 죄를 다스리고, 또 정원에서 아뢴 대로 특별히 명을 내려 하유해서 이이첨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임무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원과 양사에 하유하였다. 조섭하는 중에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2일 갑신 1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유학 신지익이 비밀리에 재차 상소하다

○甲申/幼學 **申之益** 上秘密再疏。

유학 **신지익**이 비밀리에 재차 상소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4일 병술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대사헌 유대건이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大司憲 **俞大建** 啓曰: "**申之益** 請罪, 非臣之意。 原疏未下, 不可論啓事, 言于同僚, 終不得止之, 至於連啓, 臣之罷軟不職之失極矣。 請命罷斥。" 答曰: "勿辭。"

대사헌 유대건(俞大建)이 아뢰기를,

"**신지익**을 죄주자고 청한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소가 내려오기 전에는 논계할 수 없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말하였으나 끝내 저지하지 못해 연계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나약하여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큼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년 윤 2월 14일 병술 5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무오년 식년시 문제로 지평 정결이 체직을 청하다

지평 **정결(鄭潔)**이 아뢰었다.

"삼가 대사헌 유대건이 인피한 내용을 보니 '지익(之益)을 죄주자고 청한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건은 장관입니다. 대개 일을 의논할 때에는 일체 장관의 말을 따르는 것이니, 대건이 지익을 논하는 자리에서 만약 일호라도 마음에 온당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당초 논계하는 날에 저지하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야 얼굴을 바꾸고 말을 고쳐서 마치 애초부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염치없음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달 9 일 사헌부의 관리가 장관이 신을 부른다는 전갈을 가져왔으니, 대건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느 못된 괴물이 나라의 훈구 대신을 모함에 빠뜨린단 말인가. 가슴이 아프다.' 하고, 즉시 작은 종이를 꺼냈는데, 바로 지익을 논죄하는 계사의 초고였습니다. 신은 즉시 계초를 싸가지고 가서 동료에게 간통(簡通)하고, 입계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건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동료는 속일 수 있지만 전하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원길은 이미 케케묵어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대관(臺官)을 추하게 헐뜯었는데, 정계할 때에 신은 휴가를 받아 남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곡절을 알지는 못합니다. 형편상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려우니, 신을 체직하소서."

대사간 윤인, 집의 임건, 사간 채승선, 장령 곽천호, 지평 성하연, 정언 박광선·민심이 모두 유대건이 신지익에 대한 논의를 먼저 꺼내놓고 뒤에 말을 뒤집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이에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5 일 정해 2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신지익의 상소를 들어 대사헌 유대건이 체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大司憲俞大建啓曰: "臣素以無狀, 待罪憲長。頃見申之益上疏大概, 則以兇狡二字, 橫加於遠接使李爾瞻。當此詔使已迫償接爲急之日, 生事於上國、貽禍於我邦。雖極痛惋, 而臣意則欲待原疏發落, 極盡論啓, 而言無輕重。此臣之所以引避者, 別無他意, 而辭不達意, 以致兩司多官, 攻臣不遺餘力, 臣竊哂之。呈告政院, 再次不捧, 臣之情事, 極爲狼狽。既被詆斥,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대사헌 유대건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자질로 헌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지익이 올린 상소의 대강 내용을 보니, 흉악하고 교활하다는 두 마디로 원접사 이이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날이 곧 닥쳐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다급해진 이러한 때에 중국에는 일이 생기게 하고, 우리 나라에는 화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극도로 통분할 일이지는 하지만 신의 생각에 원 소가 처리되기를 기다려 극진하게 논계하더라도 말에 경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인피한 이유였고, 별다른 뜻은 없었는데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양사의 많은 관원이 모든 힘을 다하여 신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은 삼가 어처구니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원에 사직서를 올렸으나 봉입하지 않았으니 신의 정상이 매우 낭패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난을 입었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2 권, 광해 13 년 윤 2 월 16 일 무자 1 번째기사 1621 년 명 천계(天啓) 1 년

양사의 관원들을 모두 체차할 것을 명하다

○戊子/弘文館上筈曰:

近年以來, 科屋不嚴, 循私滅公之弊, 比比有之, 而至於戊午式年講經之時, 物議沸騰, 或身爲監試官, 而同參於罷榜之啓, 或不在指目中, 而呈告於停啓之前, 則據法別嫌, 於此可見。況大臣獻削去之議, 自有查覈之教, 而持久三年, 定奪無期。至因禮曹啓稟, 特下擇日之教, 則兩司停啓, 固有所據。受由在外者有之, 新除臺諫者有之, 則兩司多官, 實無可避之嫌。且請罪之益之舉, 既出同議, 合啓、連啓, 少無異同, 則始合終違, 責有所歸。身爲憲長, 三變其說, 觀望反覆, 大失言官之體。

請持平鄭潔、掌令郭天豪、執義林健、大司諫尹詡、正言閔滌·朴光先、持平成夏衍，竝命出仕，大司憲俞大建遞差。” 秘密答曰：“依啓。俞大建欲待元疏之下而論啓者，深得法官論事之體面也。原疏未下，豈可徑先論啓乎？況此李爾瞻事，自上當爲酌處，實非臺諫所敢指揮於其間也。爾瞻既受命在外，其分義，唯當依君命進退而已。渠亦安得(經)[徑]情直行乎？兩司徑先瀆擾於靜攝之中，大失事體，顛倒非一，而玉堂只請遞大憲，其可謂識事體乎？兩司之官竝遞差。”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근년 이래로 과장이 엄격하지 못하여 사사로움을 따르고 공론을 멸시하는 폐단이 자주 있었는데, 심지어 무오년 식년시의 강경시 때에는 물의가 물끓듯 하여, 혹은 자신이 감시관이었으면서 급제자를 발표할 방안을 취소하자는 논계에 동참하기도 하였고, 혹은 지목한 중에 있지는 않았으나 정계하기 전에 사직서를 내기도 하였으니, 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혐의를 피했던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신이 삭제하자는 논의를 올려 상께서 조사하여 밝히려는 전교를 내리셨으나 3년이 되도록 질질 끌어 해결될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조가 아뢰어서 특별히 날을 받으라는 분부가 내려졌으니, 양사가 정계한 것은 진실로 근거한 바가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나가 있다가, 새로 대간에 임명되어, 양사의 많은 관원은 실지로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또 신지익을 죄주자는 거조는 이미 동의한 것에서 나왔고, 합계나 연계도 조금도 의견 차이가 없었으니, 처음에는 합의하였다가 끝에 가서 어긋난 것은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장이 되어 세 번씩이나 그 말을 변경하여 사태를 관망하면서 태도를 뒤집었으니 언관의 체모를 크게 잃었습니다. 지평 정결(鄭潔), 장령 곽천호(郭天豪), 집의 임건(林健), 대사간 윤인(尹詡), 정언 민심(閔滌)·박광선(朴光先), 사간 채승선(蔡承先), 지평 성하연(成夏衍)은 모두 출사시키고, 대사헌 유대건은 체차하소서."

하니, 비밀리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대건이 원 소가 내려지기를 기다려 논계하려고 했던 것은 법관으로서 일을 논하는 체면을 잘 알았던 것이다. 원 소가 내려지기 전에 어찌 곧장 먼저 논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이첨의 일은 위에서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할 일이지 실로 대간이 감히 지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첨이 이미 명을 받아 밖에 있으니 그의 말은 바 의리는 오직 군명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야 할 뿐이다. 그가 또한 어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는가. 양사가 조섭하는 중에 지레 번거롭게 한 것은 크게 일의 체모를 잃은 것으로 전도시킨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옥당은 단지 대사헌의 체직만을 청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양사의 관원을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69 권, 광해 13년 9월 28일 병인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영의정 박승종이 과거의 시제를 여러명에게 내게한 진상을 설명하다

○領議政朴承宗上劄曰:

臣以極庸且劣，承乏鼎軸，當此艱危之日，更無絲毫之補，思欲讓賢，出於血誠。聖旨不淮，力疾隨行。今見臺諫啓辭，正中臣過。國無臺諫，其何以糾官邪、行公法乎？因此得釋重負，則雖骨肉相愛，何以過此？鼓舞喜甚，誇詡家人矣。但今將永退，焉得無言，強趨闕下，寒氣逼骨，坐如凍蠅，心火極焰，幸不至手歐傍人。

至如處置間事，茫如夢裏，全不了了，試記其一二焉。大提學所出題馬融請代西虜。好則好矣，目今毛都司請兵，勢不克從，正論之人，皆歸咎君相。今若以此爲題，使多士製述，則其必曰："朝臣則皆欲發兵，特上意不從。"而此題是諷諫之意也，轉相告語，流聞於天將，則畢竟歸咎何地？臣職此深懼，不敢顯言，托以他說，使之改出他題而首擬矣。臣以區區慮微愛君之忠，遭此不測之謗，難辨之目，吁亦數也。至如多官，竝令出題，固是臣之妄作，然亦有前例。壬子年九月二十四日，上臨御瑞葱臺庭試，其時相臣李德馨相議出題，大提學非不在也，招李爾瞻等問題。此固一時相臣廣詢博訪之意，庸何傷乎？對讀官十三人，皆非臣相切者，臣寧容一毫私意於其間哉？臣欲務公道，反被私謗，其亦冤矣。且考較之時，臣承宗、臣弘耆、臣爾瞻鼎坐，使吳靖對讀，臣等何嘗不議於爾瞻，爾瞻亦何嘗不問於臣等？有一文，爾瞻贊之曰："能用《禮記》文字。"臣從而然之。此則李汝儉之子也，爾瞻安有私情一文，以九泉斯世爲對，爾瞻抹之，臣亦然之。此則洪恕之文，其妻甥李尙恒安敢干預？有一文甚拙，而落句有妄發字，臣欲黜之，柳根以爲元數不多，不必強黜。此則洪震之文，而李廷龜、洪震安得知之？及勘定壯元之際，柳根贊一文，爾瞻亦贊之，遂定三上。臣曰："壯元無乃訓導耶？短句雖有生氣，文頭不佳，恐不合壯元。"柳根、爾瞻，高聲應曰："必非訓導無疑矣。"餘皆類此，何可盡陳逮乎？罷黜，闕門未開，臣與弘耆、柳根鼎坐守門將廳，柳根戲言曰："吾爲朴好元亡靈所使，力主安梯之及第。"好元卽安梯之祖父也，以此言之，蓋國何預焉？特以其甥爲執言之地，凡父爲考官，子爲壯元者，皆出於私情乎？分四所抄呈可合之文，臣等再考，可黜者黜之，可陞者陞之。今若咸聚諸試官，一一問之，則蓋國所上，元不滿六丈，而蓋國所上，有一文，文體紆餘出衆，但上面與方面皆書之，蓋文多而紙少故也。爾瞻曰："有表可落。"臣及弘耆，從而黜之。惜其文佳見屈，追問落幅，是柳命立之製也。蓋國所上不盡取，於此較然矣。

元數十一人，柳根所上及臣等自取，逋共八九名。蓋國六丈之說，無乃訛傳乎？

科舉後毀謗例也。李廷龜子壻同參，近於烏飛梨落。然謂臣等妄取則可也，謂廷龜、蓋國與知，則不亦甚乎？李愷孫與姪一家二人得占，此亦廷龜子壻耶？柳稽之孤寒、進民之卑微，竝皆得參，此亦蓋國容私耶？臣與大提學，未免一場相爭，早知有時人之謗也。臣是自作之孽，宜律以奸小之罪，緣臣之故，橫辱他人之無辜者，亦何哉？嗟呼！臣與爾瞻爲一家相切之人。其文章駢儷，臣嘗稱美，故申之益呈疏，臣奮言於備局，力請仍送儻相之行。及三司齊論，臣密言於趙挺，力沮庭請之發，及至筭言，嶺儒大被憾恨，臣非伸救嶺儒，實爲爾瞻地也。若以張弓挾矢，驅嶺儒爲逆賊，則大獄必起，豈美事哉？日昨以爾瞻題爲副望者，亦慮公議，以爾瞻爲有意而出此題故耳。相愛之深，神鬼可質，一事牴牾，萬端齟齬，莫非罪罪。雖悔曷追？伏乞聖明，削臣官爵，仍命罷榜，以快其心。

答曰："惟卿既宅首揆，承命試取，則一場之事，在卿進退。況秉心公正，欲洗陋習，則出題雖廣，何傷於救時乎？落榜舉子之言，亦已可笑，身居臺閣，甘心雌和，孰主張是？良可惜也。卿勿介懷，正色鎮定，以清朝議，以濟國體。從前罷榜事，尙未處置，此榜有何云云乎？毋庸更煩。"

영의정 박승종이 상차하기를,

"신은 극히 용렬한 자로서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위급한 날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니, 어진 이에게 양보할 것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어 아픈 것을 참고 따랐습니다. 이제 대간들의 계사를 보니, 바로 신의 허물을 말하셨습니다. 나라에 대간이 없다면 어떻게 관원들의 잘못을 살펴 공공의 법을 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신의 중한 짐을 풀게 되었으니, 골육의 사랑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춤을 출듯이 기뻐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자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영원히 물러가려 하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억지로 꺾하에 나왔습니다. 찬 기운이 뺏속까지 파고 들어 마치 얼어붙은 파리처럼 앉아 있었는데, 심화(心火)는 몹시 불타올랐으나 다행히 주먹으로 옆사람을 때리는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처치했던 일들은 까마득한 꿈 속같아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학이 낸 시제는 '마융(馬融)이 서로(西虜)를 치자고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제가 좋기는 하였으나, 지금 모 도사가 청병한 것에 대해 형세상 따르지 않자 원칙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군상에게 허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이를 시제로 삼아 선비들에게 글을 짓게 한다면, 그들은 필시 '조신들은 모두 병사를 보내려고 하나 단지 성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풍간(諷諫)의 뜻으로 답할 것이니, 이런 말들이 이리저리 전해져 명나라 장수에게 들어간다면 끝내는 허물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이런 것이 두려워 속셈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핑계대고 시제를 달리 고쳐내도록 해 수의(首擬)하였습니다. 신은 구구하게 미세한 것까지 염려하며 인군을 사랑하는 충성을 다 하였으나, 이런 예기치 못한 비방과 변명도 못할 죄목을 당했으니, 이도 또한 운수라 하겠습니다. 다른 관원에게 시제를 내도록 한 것은 신의 망령된 짓이나 이도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임자년⁰¹⁶ 9 월 24 일, 상께서 서총대 정시에 임하셨을 때, 당시 상신인 이덕형(李德馨)이 상의하여 출제했는데, 대제학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이이첨 등을 불러 시제를 물었습니다. 이는 바로 상신으로서 넓게 묻고 두루 살핀다는 뜻이니, 사체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독관(對讀官) 13 인은 모두 신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니 신이 어찌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의를 쓰겠습니까. 신은 공도(公道)를 힘쓰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의로 했다는 비방을 받았으니, 원통합니다.

그리고 시권(試券)을 고찰할 때, 박승중·박홍구·이이첨 셋이서 앉아 오정(吳靖)으로 하여금 읽도록 하였으니, 어찌 신들과 이첨이 서로 상의하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글을 보고 나서 이첨이 예기(禮記)의 문구를 잘 인용했다고 칭찬하기에, 신도 따라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여검(李汝儉)의 아들이 지은 것이었는데, 이첨이 사사로운 정리로 그러했겠습니까. 어느 글에는 구천(九泉)과 사세(斯世)를 대어(對語)로 하였는데, 이첨이 지워버리겠다고 하기에, 신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홍서(洪恕)가 지은 것이었는데, 그의 처생(妻甥) 이상항(李尙恒)이 어찌 관여했겠습니까. 또 어느 글은 아주 서툴게 지어졌고 끝의 귀절에 안 쓸 말을 쓴 것이 있어 신이 빼버리려고 하자, 유근(柳根)이 합격시킬 수효가 적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홍영(洪靈)이 지은 것이었는데, 이정귀와 홍방(洪霽)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장원을 정하려고 할 때, 유근이 어느 한 글을 칭찬하자, 이첨도 따라 칭찬하기에 마침내 삼상(三上)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장원은 훈도(訓導)가 아닌가. 단구(短句)에는 생생한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 장원은 못 되겠다.'고 하니, 유근과 이첨이 큰소리로 '분명히 훈도는 아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어찌 다 진달할 것이 있겠습니까. 과거장의 일이 끝나서 나오는데, 쫓문이 열려있지 않아 신이 홍구·유근과 함께 수문장 청사에 앉았는데, 유근이 농담으로, '나는 박호원(朴好元)의 죽은 녀이 시켜서 그랬는지 안제(安梯)를 급제시키기 위해 힘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호원은 안제의 할아버인데 이런 말을 하였으니, 신국이 어찌 간여했겠습니까. 다만 그의 생질이라고 하여 말하기로 한다면, 아버지가 고관이 되고 아들이 장원이 된 경우가 모두 사사의 정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분정된 네 곳에서 합격될 만하다고 뽑아 올린 글을 신들이 다시 고찰하여 떨어뜨릴만한 것은 떨어뜨리고 올릴 것은 올렸습니다. 당장 여러 시관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물어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국이 올린 것은 6 장이 되지 않았으며, 신국이 올린 글 중 어느 한 글의 문체가 뛰어났는데, 뒷쪽과 모서리까지 모두 쓴 것은 글은 많은데 종이가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첨이 '표문(表文) 가운데 떨어뜨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기에, 신과 홍구가 그 말에 따라 떨어뜨렸습니다. 그 문장이 아름다운데 떨어진 것이 애석해 나중에 떨어뜨린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 바로 유명립(柳命立)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국이 올린 것을 모두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합격된 수효가 11 인인데, 유근이 올린 것과 신들이 뽑은 것이 모두 8, 9 명입니다. 그렇다면 신국이 6 장을 합격시켰다는 말은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뒤에 혈뜬는 일은 으레 있는 일입니다. 이정귀의 아들과 사위가 함께 합격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들에게 잘못 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귀와 신국이 참견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심손(李愷孫)도 조카와 더불어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합격하였는데, 이들도 정귀의 아들과 사위입니까. 또 외롭고 가난한 자인 유계(柳稽)와 비천한 출신인 진민(進民)이 아울러 합격하였는데, 이들도 신국이 사사로운 뜻으로 합격시켰겠습니까. 신이 대제학과 한바탕 서로 다투었으니, 시인(時人)들의 비방이 있으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짐작하였습니다. 이는 신 스스로 지은 죄이니, 간소(奸小)한 짓을 한 죄에 대한 형률을 받아도 좋지만 신 때문에 무고한 다른 사람까지 옥을 당해야 합니다. 신과 이첨은 한 집안 사람처럼 서로 절친하였습니다. 그의 문장 중 변려문(駢儷文)에 대해 신이 아름답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지익(申之益)이 정소했을 때, 비국에서 힘껏 말해주었으며 이어서 빈상(賓相)으로 보낼 것을 강력히 청하였습니다. 삼사가 일제히 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신이 비밀리 조정(趙挺)에게 말하여 정청(庭講)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였으며, 차자로 영남 유생들의 일을 말하였다가 그에게 크게 원한을 샀으나, 이는 신이 영남 유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은 이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첨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가졌다고 하여 영남 유생들을 몰아다 역적을 만들었다면 필시 큰 옥사가 일어났을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일전에 이첨이 낸 시제를 부망(副望)으로 한 것도 공공의 논의를 염려한 것으로 이첨이 무엇인가 뜻을 두고 시제를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아끼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물고 늘어지니 이는 모두가 신의 죄입니다. 후회한들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성명께서는 신의 관직을 깎아버리고 파방(罷榜)하라 명하시어 그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영상으로서 시취(試取)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과거장의 모든 일은 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습을 씻어버리려 하였으니, 설령 시제를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시제를 구원하기 위한 일인데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낙방한 거자들의 말은 가소로운 일인데, 대각에 있는 자가 그런 자들과 어울려 서로 호응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인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경은 개의치 말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조정의 의논을 맑게 하고 국체(國體)를 세우도록 하라. 전일 파방한 것도 아직 처치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과거에 대해 무슨 말들을 하는가.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신지익(申之益) 상소문

속잡록(續雜錄) 신유년 천계 원년, 광해군 14년(1621년) 대동야승 / 고전선집

[출처] [속잡록\(續雜錄\) 신유년 천계 원년, 광해군 14년\(1621년\)](#)

1월 18일 혜성이 또 나타나 서로 치고받고 하기를 시가 넘도록 하였으며, 궁중에서 저주하는 재앙이 있었다. 서궁(西宮)이 임금을 해치려고 저주의 요술을 부린다고 지적한 것.

2월 황제가 등극하자 상천사(上天使) 유홍(劉鴻)과 부사 양도연(楊道演)이 패문(牌文)을 지니고 서울에 이르자 예조 판서 이이첨이 원접사로 떠났다.

○ 유학(儒學) 신지익(申之益)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역(周易)》 곤괘의 초효에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 하였는데, 선유(先儒) 정이(程頤)가 해석하기를, ‘음(陰)이 처음에 엉겨서 서리가 된 것이 차차 도에 이르면 굳은 얼음이 된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소인을 대우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시초에 제어하지 못하고 차차 그것이 어느 도에 이르러 권세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비록 제어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당 나라 문종(文宗)이 주지(周墀)에게 이르기를, ‘짐이 주 나라 난왕(赧王)과 한 나라 헌제(獻帝)와는 어떠한가?’ 하니, 주지가 아뢰기를, ‘그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이온데 어찌 성덕(聖德)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문종이 이르기를, ‘난왕과 헌제는 강력한 제후에게 제어를 받았고, 나는 종놈에게 제어를 당하니 아마 그들보다도 못한가 보다.’ 하고,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습니다. 대개 문종은 당 나라의 총명한 임금이요, 환관은 궁중의 한 종입니다. 총명한 임금으로서 종들을 제어함에 나아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것이 한번 숨쉬고 한번 발길질하는 사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순순히 내버려 두어 권세가 이미 왕성하게 되면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이르러도 물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 총명함이 그들의 간사함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혜가 그 사악함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신하에게 돌아가고 위엄을 아랫사람에게 빼앗기게 된 까닭입니다. 환관들의 뜻은 권세를 탐하고 총애를 견고히 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데도 그들을 제어하기가 지극히 어려움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조고(趙高)와 왕망(王莽)과 같은 무리를 처음에 제어하지 못하고 종당에 다스리려고 하려면 또한 어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엿드려 살피건대, 이이첨은 지난날 환관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그의 현우(賢愚)와 사정(邪正)은 산야에 묻혀 있는 외로운 사람으로 능히 미리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나, 나라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흉악하고 교활하며 간사하고 사특하기가 전고(前古)에 짝이 없다.’ 하니, 또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치하는 데 나타난 것으로 말한다면 간사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시복을 만들어 대간(臺諫)과 시종들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습니다. 간혹 그의 죄상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곧 양사(兩司)를 불러 떼지어 일어나 그를 공격하게 하여 일찍이 대간과 시종을 지낸 사람도 곧 멀리 귀양가며, 품계가 정경(正卿)에 있는 자라도 하옥(下獄)을 면치 못하며, 유생 및 종실(宗室) 중에서 상소하는 자에 이르러서도 모두 금부(禁府)에 내려 중법으로 억압하여 혹은 곤장 아래에 죽기도 하고 혹은 먼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은 조고나 왕망 시대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금부란 왕옥(王獄)으로 종묘와 사직 또는 국가에 관계되지 않으면 왕옥에 가둘 수 없는 것이니, 신은 이이첨의 죄를 말하는 자가 종묘와 사직 또는 국가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히 그들을 왕옥에서 다스리는지를 감히 모르겠으며, 신의 의혹은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합니다. 신이 몰래 들으니, 이이첨은 지난해에

감히 거짓 차자를 지어 우리 전하께서 흉악한 누루하치와 강화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아! 전하께서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강화의 뜻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가 감히 이러한 말을 먼저 지어내어 그 강직하다는 것을 과장하려고 하여, 전하를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실로 전하의 악명을 밝게 드러내어 나라 안에 전파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뜻이 혹 누설되어 현명하신 상감 아래에서 달아날 곳이 없게 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여러 사람을 위협하여 죄를 면하려는 계책을 꾸미려고 한 것이니, 어찌 흉악하고도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글이 중국에 전하여져 간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신이 알지 못하나, 거짓이건 참이건 간에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 사람들의 귀로 전해진 것이 정지량(鄭之良) 등의 상소문에 이른 대로라면, 신하로서 이러한 죄명을 쓰고 무슨 면목으로 천지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이이첨이 방자하여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신경희(申景禧)는 이이첨의 가신이었는데, 그 흉악한 책모가 발견되자 이이첨의 집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전하께 아뢰는 자가 없습니다. 허균(許筠)은 이이첨이 품어 기른 자로서 부자(父子)와 다름이 없었으나, 반역의 죄상이 이미 드러나자 술선하여 그를 죽여 그의 입을 없애니 사람들은 모두 그가 두려워 감히 한마디라도 전하께 아뢰지 못합니다. 황정필(黃廷弼)이 이이첨의 노예라는 것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로서, 황정필을 엄하게 국문하면 곧바로 자백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이첨은 후환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밤중에 사람을 시켜 몰래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죄안(罪案)을 작성하고 자백을 받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였으니, 그를 시켜 서명할 수 없어 수촌(手寸 수결)만 모방하여 한 글자도 모르는 자가 한 것같이 하였습니다.

아! 황정필은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린 자입니다. 그러니 한 숨이라도 아직 남아 있다면 자기 성명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유희발(柳希發)의 계사(啓辭)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한번 그 작성된 죄안을 꺼내어 서명을 했는가 수결을 했는가를 살펴보소서. 서명을 했으면 죽기 전이요, 수결을 했으면 죽은 뒤입니다.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귀가 있는 자는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하고 있으니 그 명백함이 열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닌데, 이이첨은 감히 차자를 올려 상감을 속여서 아뢰기를, '황정필은 형을 받을 때 그 아내를 크게 불렀습니다.' 하여, 자기가 남몰래 죽인 자취를 덮으려고 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속임은 법에 마땅히 죽여야 하거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의 말도 전하께 아뢰지 못합니다.

아! 이이첨이 흉악한 짓을 한 자취는 온 나라 사람들이 귀로는 능히 들을 수 있으나, 눈으로는 차마 보지 못하며, 눈으로는 능히 이것을 볼 수 있으나, 입으로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의 입을 꿰매고, 온 나라 사람들의 혀를 잡아매는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혀가 모두 잡아 매어져서 말할 수 없으면,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 아침 저녁 사이에 이르더라도 전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된 연후에 이이첨은 비로소 손에 침을 뱉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를 해칠 사람은 없다.' 하니, 그가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이 장차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하의 총명이요, 순보다도 뛰어나서 마침내 해와 달을 속이고 가릴 수가 없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감히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키어 말이라고 하던 계략을 꾸며, 그의 집에 양사(兩司)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황길남(黃吉男)의 죄를 논하게 하니, 사간원이 앞장서고 사헌부가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상감께서 간사한 짓들을 먼저 살피시고 마침내 엄정한 비답을 내려 중지되었습니다.

아! 저 사슴과 말은 짐승이라 제왕이 구중궁궐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혹 가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위경(李偉卿)의 노비가 사대부의 처를 끌어 잡아내어 그 치마와 버선을 벗긴 일은 고금에 없었던 변고이니, 우리 나라가 유지된 까닭은 그 귀천의 명분이 현격하여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유생으로 죄가 있어 마땅히 잡아야 할 자에게도 또한 무당으로 하여금 그 집안을 정탐하게 하고, 잡인이

마구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족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위경이 아니었다면 황길남의 상소가 어떻게 이르렀겠습니까? 황길남의 상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서 나왔고, 이위경의 상소는 거짓말을 꾸민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대\(三代\)에 폐석\(肺石\)](#)을 세워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통하게 하는 법안으로 한다면 죄는 이위경에게 있지 황길남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멎게 하려면 마땅히 이위경을 처벌해야 합니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른가는 비록 삼척동자라도 모두 능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이첨이 감히 흑백을 어지럽게 하는 논의를 꾸며내어서, 상감의 위엄을 엄폐하려고 하니, 이것은 조고(趙高)도 감히 하지 못하던 일이옵니다. 대개 조고가 천하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 어찌 이이첨보다도 못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남에게 감히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씌우지는 못하고, 다만 사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만을 몰래 중상했을 뿐이니, 이것은 그래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이첨은 스스로 이르기, '권세가 이미 중한데 무엇 때문에 몰래 중상하는 것을 일삼겠는가?' 하여, 마침내 마음대로 삼사(三司)를 지휘하여, 자기가 불려서 부리는 종들과 다름이 없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니, 이는 조고보다도 더욱 심한 자이니,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사로운 도적들이 궁중에 출입하여 저주하는 괴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커다란 반역이라, 끌어들인 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이첨 자신이 의금부의 장관이었을 때, 이 도적의 괴수로 하여금 얼어붙는 곳에 있게 하여, 그가 곧 죽여버려 그의 입을 없애려고 한 것같으니, 비록 옥졸(獄卒)이 한 것이라 칭탁하지만 장관된 자가 어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의금부의 낭청이 모두가 다 이이첨의 문생들입니다. 10 여 년 이래 이이첨의 문하에서 나오지 않은 자는 금부 도사가 될 수 없으니, 이도 또한 이이첨의 심복이라는 것은 길가는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직에 갈려 나갈 때에 감히 거짓 차자를 올려, 한편으로는 정직함을 팔고 임금을 파는 자료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을 속이고 스스로 면책하려는 구실로 삼으니, 그 마음의 소재는 명약관화합니다. 그가 비록 지극히 교활하다고 해도 어찌 능히 하늘과 땅의 도량과 해와 달의 밝음에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비답이 한번 내려움에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간(臺諫)에서는 입을 다물고 한 마디의 말도 없는 것은 모두 이이첨의 문하에서 낳고 자란 자들로서 이이첨이 있는 것만 알지 전하가 계신 줄은 모르기 때문이니 이이첨의 권세가 또한 전하보다도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옆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 기회에 그를 제어하시어 배꼽을 물어뜯는 뉘우침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를 놓치면 다시는 전하께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찌 그 옛날 당 나라 문종(文宗)이 눈물을 흘리던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옆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깊고 원대하게 살피시옵소서.

아! 왕수징(王守澄)은 당 나라 문종의 추대를 도운 공이 없지 않으나, 권세가 이미 중하여졌을 때는 마침내 문종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한탁주(韓侂胄)는 송 나라 영종(寧宗)을 위해 정책을 수립한 공이 없지 않으나, 권세가 이미 중하게 되자 영종에게서 구석(九錫)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이이첨은 전하를 보호한 공이 없지 않으나, 권세가 이미 중하게 되자 방자하여 기탄이 없어져 이와 같음에 이르렀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간사한 사람의 정상은 한 수레바퀴에서 나온 듯 꼭 같으니 어찌 상감의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정입니다. 사는 것이 진실로 좋지만 삶을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바가 있으며, 죽는 것이 진실로 싫지만 죽음을 피하지 않을 바가 있습니다. 10 여 년 이래 이이첨에 대해서 말하였다가 중죄를 뒤집어쓴 사람이 앞뒤에 잇달았으니,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또한 사람이니, 말하면 죽고 말하지 않으면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이것을 말하여 피하지 않는 것은 그 중한 것이 종묘와 사직에 관련되므로 한 몸의 생사는

염려할 게 못 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뜻을 가엽게 여기시고 이 충성됨을 살피신다면 종묘와 사직의 복이겠습니다. 신은 간을 헤치고 피를 흘리며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 정원(政院)의 계(啓)에, “원접사가 국문(國門)을 나가자마자 공격하는 상소문이 이르니 별도로 처리할 일입니다.” 하니, 비답에, “별도로 처리한다니 장차 어찌 하려고 하는가?” 하자, 회계(回啓)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막중 막대하니, 어찌 남의 공격을 받고서 태연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꿀 수 없으시면 유시를 내리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 옥당(玉堂)의 차자에 답하기를, “이이첨의 일은 위로부터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요, 실로 대간이 감히 그 중간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이첨은 명령을 받고 밖에 있으니, 그 분의(分義)로 마땅히 퇴진해야 할 뿐이니 그가 어찌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는가? 양사(兩司)에서 안정하게 조섭하는 중에 경선(經先)이 시끄럽게 하는 것은 크게 사체(事體)를 잃었고 뒤죽박죽함이 하나가 아니며, 옥당에서도 다만 대신(大臣)을 바꾸기를 청할 뿐이니 사체를 안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양사의 관원들을 아울러 바꾸라.” 하였다.

○ 삼사(三司)가 요사한 신지익(申之益)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한다는 것에 대한 답에, “원래의 상소문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데 삼사에서 경솔하게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상소문의 글을 보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황당해서는 안 된다. 말한 자를 다스리기를 청한 것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하였다.

○ 신지익이 재차 상소하기를, “신은 엎드려 양사(兩司)가 합계한 글을 보고, 놀랍고 황공하여 떨리고 정신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양사는 모두 이이첨의 문객이므로 논핵하여 아뢰는 일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미 알고 있었으나, 합계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너무 심합니다. 이이첨의 권세의 번성함이 이렇듯 극에 이르렀을 줄은 신도 또한 일찍이 요량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의 피맺힌 상소가 어찌 부질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이이첨이 일찍이 그 차자를 몰래 중국 조정에 보내어 전하를 팔려고 하였다는 말이 진실로 옳다면 사신을 접견할 때 그가 반드시 임금과 나라를 팔아치울 변고가 없으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종묘와 사직의 존망이 이번 한 차례의 일에 달렸으니, 신이 비록 이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아오나 피맺힌 정성으로 어찌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원접사를 바꾸어 파견하는 일은 한 가지의 정사(政事)에 불과하며, 오늘 뽑아서 내일 떠나 보내더라도 안 될 것이 없으니 어찌 국가에 큰일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설혹 긴급하여 다 준비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이첨이 임금과 국가를 팔아치우는 것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양사(兩司)에서는 이이첨이 이미 국문(國門)을 나섰는데 신의 상소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중도에 머뭇거리게 되면 국가에 큰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여 자기들 주장의 종지(宗旨)로 삼고 있으니 이는 또한 험박하는 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감께서는 급히 이이첨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아 뜻밖의 변고가 없도록 하신다면, 진실로 종묘와 사직의 복이옵고 신이 지극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신을 요사로운 도적이라 하고, 신의 말을 무고(誣告)라고 하는 데는 신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삼대(三代)로부터 송 나라·원 나라에 이르기까지 권세 있는 간신의 죄를 말하다가 요사로운 도적이라고 지목 받은 자가 많습니다. 신의 한 몸은 원래 아까워할 것이 없으나 이이첨의 권세를 전하께서 어떻게 억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사의 죄목도 역시 신의 상소문 가운데 열거하였으니 국법으로 본다면, 그들이 마땅히 먼저 스스로 피험해야 하거늘 어찌 감히 태연하게 합계(合啓)하여 상소하여 진언한 사람을 논핵할 수 있겠습니까? 이이첨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신 줄은 모르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는 정상이란, 아! 또한 참혹합니다.

제갈량(諸葛亮)은 한 나라의 신하로서 제갈량의 거취(去就)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을 점칠 정도였으나, 비위(費偉)가 제갈량을 논핵하니 제갈량은 받아들여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비위를 권장하여 말하기를, '뜻과 생각이 순수하고 충성스럽다.' 하였습니다. 설사 이이첨의 충성스러움이 제갈량과 같다면 오히려 마땅히 받아들이고 죄를 주지 아니할 터인데, 더구나 이이첨은 임금을 속이고 위복(威福)을 제멋대로 한 것이 정사에 나타나 여러 사람의 눈을 숨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저들이 무고(誣告)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르는 일을 공격하고 밝혀내어 엮어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상소문 중에 말한 것은 모두 이이첨이 행한 일의 실정으로 나라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요, 전하께서 통촉하고 계신 것이니, 어찌 한 마디라도 무고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대개 이러한데도 모함이라 하니, 상감을 위협하고 제어하는 수단이 아니면 반드시 이 계(啓)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요즈음 전하께서 특별히 엄한 비답을 내리기를, '권세에 영합하여 스스로 임금을 능멸하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죄를 지은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였습니다. 만약 양사가 신하된 의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마땅히 황공하고 삼가서 몸둘 곳이 없고, 스스로 꾸짖고 징계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양사가 어찌 감히 **이이첨**의 뜻만을 받들고 바라보는 데만 스스로 달게 여기고, 마음대로 대부(臺府)에서 남을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이첨** 또한 어찌 감히 지휘하는 데 스스로 처하여 양사가 받들고 바라보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권세가 이미 중하니, 나를 어쩔 것인가라고 스스로 믿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공경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위협하고 제어할 마음을 품으며, 피험할 뜻이 없고 감히 남을 죽일 꾀만을 생각하여, 신의 상소문이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계하(啓下)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대번에 합계(合啓)하였습니다. 합계가 불리하면 반드시 장차 합사(合司)할 것이요, 합사가 불리하면 반드시 장차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니, 핍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드려 바라옵건대, 상감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처리하시옵소서.

신은 혈혈단신으로 외로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으니 한 마디 말이 세상을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화가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충효의 절개만은 기약할 뿐인데 발분함이 극에 달한 지금 어찌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이이첨**의 흉악하고 교활한 죄상은 길가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데, 전하께서 홀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언론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광영(郭瑛)이 죽은 후로 **장마(仗馬)**가 울지 않은 지 이미 4년이 지났으니, 신이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한 통의 글을 아침에 올리자 합계(合啓)가 저녁에 이르니, 대궐 문밖에 자리를 깔고 부월(斧鉞)이 이르기를 기다리오니 보잘 것 없는 신의 목숨은 실로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신의 한번 죽음은 스스로 결심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다만 두려운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신을 경계로 삼아 다시는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질까 합니다. 적신(賊臣)의 권세가 날로 융성하고, 또 융성하므로 반역의 군대가 비록 핍박하여 대궐 아래 이르러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말이 이에 이르니 간담이 찢어져 통곡하는 이외는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주 D-001]삼대(三代)에 폐석(肺石) : 붉은 돌. 이것을 궁문 밖에 세워두고 백성 중에 외로운 사람이 그 원통함을 호소하려 하여도 상관이 막아서 하지 못할 경우에 폐석 위에 서게 한다. 3일 동안 서서 있으면 사(士) 송사를 판결하는 법관이 그 사실을 심문하여 위에 아뢰고,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한 상관을 죄주게 한다. 《주례 대사구(周禮大司寇)》

[주 D-002]장마(仗馬) : 당 나라 시대에 천자의 의장으로 대궐문 앞에 말 8 마리를 세워둔다.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이 되었을 때 간관들이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므로 두진(杜眞)이 세워둔 장마같다고 풍자하였다. 이임보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세워둔 장마를 보지 않았는가? 종일토록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잘 먹여주고 한번이라도 울면 쫓아버린다." 하였다. 이것은 간관을 위협하여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청주 사림의 학맥과 서계 이득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종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16-17세기 청주사족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하나로 선 행연구와 경주 이씨 익재공파 대동보를 중심으로 서계 이득윤(1553~1630)의 생애와 학맥을 살펴보았다.

서계 이득윤은 일찍이 부친 섬계 이잠과 서기 박지화로 부터 수학하였으며, 학문의 근본지향을 '위기지학'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학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소학에 수록된 여씨향약을 보급하여 주자학적 세계를 구현하려하였다.

더욱이 부친의 뒤를 이어, 후생을 훈도하는 것을 자기의 책무로 삼아서 청주지역의 교육에 힘썼다. 그리하여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 하였던 실천적 사림으로서 17세기 전반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득윤은 문인 이덕수와 함께 낭성 팔현의 일인으로 청주지역에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이 형성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신항서원의 창건에 주역으로서 청주지역의 기호학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정신을 계승한 기호사림이다.

자신의 문인 이었던 이덕수가 기호학파의 학맥과 연이 닿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하겠다. 인쇄하기 인쇄 이러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은 비교적 쉽게 17세기 후반부터 청주지역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지사족에 관한 연구는 향토사회사 연구의 하나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지역에도 여러 사족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족 중에 토착세력으로 확고한 기반을 갖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선 전기에 입향하여 혼인과 관직진출 등을 통해 점차 그 기반으로 마련하면서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에 대한 연구는 김장생, 송시열등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한 호서사림의 테두리 안에서 파 상적으로 연구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7-18세기의 청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서사림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면 그 이전의 청주사족에 동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암 송시열 이전에 형성되었던 초창기 기호사림, 특히 15-16세기 청주사림에

대한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15-16 세기 청주사림에 대한 연구로서 호서사족 친인척 집단의 혼인관계"를 검토 하였고, 신항서원의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청주사림에 대해 고찰 하였다.

15-16세기 청주지역의 사림을 이끈 핵심세력 이었던 세칭 '낭성팔현'이라는 인물들이 조선후기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계 조강(1527~1599"을 중심으로 청주사족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서계 이득윤(1553-1630)은 낭성팔현의 일인으로 청주지역 사림의 구심체이던 신항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조선중기 청주지역에서 활동 했던 문인이자 교육자로 해동명신록과 국조인물고에 수록되어있으며, 청주지역 사림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되어 청주지역 선비문화의 형성에 바탕이 된 인물이다.

"서계 이득윤은 괴산군수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역학에 능통 하였고 거문고악보인 현금동문류기를 남긴 인물로만 알려져 있을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서계가 출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관력이 없다는 점과 청 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지방 문인으로 현전하는 문집이 부족함 때문으로 보여 진다.

서계이득윤에 대한연구는 대부분 그의 문학과 예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득윤이 지은 육가인 서계육가. 옥화육가를 다루면서 서계 이득윤의 생애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서계 이득윤의 생애"를 고찰하고 그의 시 세계를 학문과 사상 이라는 두 축에서 살펴보았다.

한국 음악사에서 이득윤이 가지는 위치와 현금동문류기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득윤의 생애와 악학사상에 대 해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이득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 연구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 찰 하고있다.

이 논문은 청주지역 향촌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하나로 청주지역 사학자들의 선행연구와 경주이씨 익재공파대동보를 중심으로 서계 이득윤의 활동을 살 핀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계 이득윤의 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주이씨의 청주 입향 과정을 확인하고, 이득윤의 수학과정과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이득윤의 학맥과 문인관계를 살펴 봄 으로서 그와 청주사림과의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서계 이득윤이 청주사족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17-18세기의 청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서사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계 이득윤을 통 해 청주사족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밝혀진다면 청주 사족의 동향에 대한 실체가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2. 서계 이득윤의 가계와 생애

이 논문은 청주지역 향촌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하나로 청주지역 사학자들의 선행연구와 경주 이씨익재공파대동보를 중심으로 서계 이득윤의 활동을 살핀 것이다.

본 연구는 서계집에 실린 행장과 서계선생연보 그리고 가승을 중심으로 이득윤의 생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득윤의 본관은 경주이다. 경주이씨는 알평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이알평은 양산 촌장의 신분으로 신라 시조왕(박혁거세)의 좌 명공신이 된 인물이다.

경주이씨 후손들은 대대분이 고려 말 대학자였던 익재 이제현(1287~1367)을 중시조로 삼고 자신을 익재공파라고 부르고 있다. 익재공파에 해당하는 경주이씨 집안은 많이 있겠지만 청주로 이거하여 청주사족으로 자리 잡은 경주이씨는 계유정난과 관련된 다.

이알평의 23세손인 창평공 이공린은 박팽년(1417~1456)의 딸과 결혼하여 처항이었던 청주 수락동(현재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으로 이거하여 정착한다.

[필자 편집 수정] 박팽년(1417~1456)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1456(세조 2) 그의 나이 20세(歲) 되던 해 사육신의 한 사람인 장인 취금헌 박팽년(醉琴軒 朴彭年)의 죄(罪)에 연좌(緣坐)되어 약 삼십 년(三十年)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뒤 어머니 남양 홍씨(南陽洪氏)를 절부(節婦 : 절개 있는 부인)로 봉(奉)하고, 그 자제를 등용하라는 왕명에 따라 1482(성종 13)에 비로소 이름을 무반(武班)에 얹었다. 뒤에 추천되어 통례원 인의(通禮院 引義 : 예의를 맡아보던 관아의 從六品 벼슬) 겸, 한성부 참군(漢城府 參軍 : 한성부의 군사를 맡은 正七品 벼슬)이 되었다.[수정 편집 끝]

그는 어려서 부터 재질이 뛰어났고 포부가 원대 하였으나, 장인 박팽년의 죄에 연좌되어 몇 년간 관직에 나 갈수가 없었다. 그 뒤 에 사면되어 무반의 직을 잠시 가졌다가 천거로 통례원인(通禮院 引義)이 되고, 한성부참군을 겸하였다.

이어 흥덕현감, 함열현감, 창평현감을 역임하면서 향리를 잘 통솔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아들 이원의 죄에 연좌 되어 해남에 유배 되었다가 종종반정에 의하여 풀려났다. 수차례 자신의 죄가 아닌 일에 연좌 되었고 또 나이가 많아 관직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청주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이공린은 오, 구, 원, 타, 별, 벽, 경, 곤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여덟 형제가 모두 총명하고 강직하여 세칭 '팔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8형제의 대부분이 부모 생전에 바른말을 간하다가 사화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거나 형의 고통으로 죽었고, 또는 유배를 받아 각자 유배지로 흩어지게 된다.

이중 막내이며 이득윤의 조부가 되는 곤은 현 청주시 미원면에 자리를 잡았으며 곤의 넷째 아들인 잠이

서계의 아버지 이다. 경주 이씨는 "이공린"을 시작으로 청주에 입향 하였고, 이후 덕수이씨, 파평윤씨, 남양홍씨, 초계변씨 등과 통하면서 송시열의 학풍이 청주지역에 자리 잡기 이전 청주사족의 학문에 영향을 끼쳤다.

서계 이득윤의 부친인 섬계 이 잠(1528~1575)은 16세기 후반 청주 사족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섬계 이 잠은 진사로서 청주 수락동에 섬계 학당을 열어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다.

그는 이득윤, 이대건, 나윤충, 홍순각, 변유청, 변유정등 71명의 후학을 양성 하였으며, "섬계학당에 왕래하면서 강학한 인물도 변 경복, 신발, 신경행, 김곤, 노일원 등 22명 이었다. 제자 중에서 문과 급제자는 4명, 무과 급제자는 6명, 사마시 입격자는 19명이 배출 되었다.

문인들의 본관을 보면 경주이씨 족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주김씨 8명, 청풍김씨 5명, 안정나씨 4명 등 대체로 고르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섬계 이잠의 명망이 청주지역에 많이 알려지고, 또한 아직 당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우암 송시열의 학풍이 청주지역에서 자리 잡기 이전에 서계 이득윤의 부친과 함께 향촌 사회를 이끌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서계 이득윤의 문학적 이해와 음악적 이해의 연구 이다. 그러나 서계의 부친은 청주지역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자임을 알 수 있다.

이득윤의 자는 극흠, 호는 서계이다. 선생의 초휘를 '덕윤' 이라 하였는데 이 때문에 관련된 연구에는 이득윤과 이덕윤의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선생은 1553년(명종 8) 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에서 섬계 이잠(1660~1706)과 진주 강씨 사이의 장 남으로 태어났다. 이득윤은 그의 나이 6~7세 부터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기시작 하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른스러운 도량이 있고 책을 받으면 스스로 읽고 기억하려 애쓰는 것을 보고 그의 부친이 기특해 하면서 "이아이가 뜻을 돈독히 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대유가 될 것이 다."라고 하였다.

이득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관직생활 보다는 학문에 전념 하였으며 어려서는 정구(1543~1620)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연 마 하였다 약관의 나이를 넘자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었던 서기(1523~1591)와 박지화(1513~1592)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문하에 서 수학 하였다.

1575년에는 부친상을 당해 삼년상을 모시면서 묘하에 조그만 집을 짓고 '추원'이라는 편액을 써 붙였다.

1580년 그의 나이 28세때, 초취인 파평윤씨와 사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해에 모친상을 당했다.

1600년 48세에 왕자사부에 발탁 되었으며 .권학잠을 지어 올리자 선조께서 칭찬하셨다.

1602년 50세에는 선조께서 주역에 주를 단 것이 오류가 많아 교정을 설국하라 명하자, 역학에 밝은 자를 가려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득윤이 그 선발에 우선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1604년 공조좌랑에 제수 되었다가 다시형조에 추천 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604년 52세에 의성현령에 제수 되어 어진정치를 베풀어서 선조로부터 표리고 2년 후인 1582년에 옥구 장씨에 게 장가들었다. 1588년 36세에 장남 홍유를 낳았으며 그해에 진사에 합격하는 경사가 겹쳤다. 이득윤은 평소 과거공부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뜻을 굽혀서 과거에 응시 한 것이었다.

1579년 45세에 학행으로 천거 되어 희릉참봉에 제수 한 별을 하사받았다. 서계는 광해군 때에 시사가 변한 것을 보고 청주 옥화동에 들어가서 춘풍당 ,추월헌을 짓고 공부에 전념 하였다.

1611년 59세에 정인홍(1535~1623)이 이언적(1491~1553)과 이황(1501~1570)을 무고하자 이 소식을 들은 서계는 분개하여 삼남지역에 통문을 돌리고 정인홍을 배척 하였다.

1613년에 **이이첨**(1560~1623)이 인목대비를 폐하러 모의할 때는 "어찌 어머니 없는 나라에서 구차히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분 연히 관련 편지를 불에 던져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1622년 71세에 여러 현인들이 선생을 유일로 천거하여 지평에 비의되었다가 곧 공조정랑에 제수되었다. 그 해 9월 선공감 첨정에 승진되었으나 물러날 뜻을 보이자 특별히 어찬을 내려 우대하는 뜻을 보였다.

1624년 그의 나이 72세에 괴산군수로 부임하여 괴산군민의 폐단을 소상하게 적어 .괴산군민 소 를 올렸으며, 향약 법을 시행하 여 백성의 윤리를 돈독하게 하였다. 서계는 그의 나이 78세에 타계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졸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괴산군수 이득윤이 죽었다. 처음의 이름은 덕윤이고 자는 극흠으로 경주인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효행이 있었다. 반정 초에 공조정랑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고 왔다가 뒤에 괴산군수로 제수되었다. 서울에 와 사은하는 길에 도성사람들의 음성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쇠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으니, 난리가 끝 이 안 났다."하였는데, 정묘에 이르러 그가 한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 고을을 다스리는데 성적이 으뜸 이었으므로 상이 특별히 통 정의 자급을 주어 포상하였다.

결국은 늙고 병들어 집에 돌아갔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78세였다(조선왕조실록 인조 8년(1630) 5월 28일) 서계의 묘갈명을 지은 이경석은 그가 예문관으로 있을 때에 서계의 상소문에서 오음이 그 조화를 상실했을 때는 변란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이괄이 변란을 일으켰다고 적고 있다.

선행의 연구에서는 화담 서경덕의 문하에서 서기, 박지화와 함께 수학 함으로서 새로운 학맥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몇 번의 출사의 기회가 있었으나 사양함은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함으로서 그의 사상은 "위기지학" 의 성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소 과거공부 하는 것 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뜻을 굽혀서 과거에 응시 한 것은 그가 상당한 효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72세에 괴산군수로 제수 되면서 선정을 베풀었으니 정치가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어려움에는 자신에 의지를 확고히 하는 인물인 것이다. 서계 이득윤의 묘는 한남 금북정맥의 상당산을 지나북향하여 현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 수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의 태생지에는 지금

도 선생이 식재하였다고 하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긴 세월을 지키면서 청아한 모습으로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

재취인 옥구 장씨와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으나 2남 1녀는 죽고 아들은 이홍유(1588~1671)이다. 이홍유 역시 조부와 부친을 이어 교육자로 활동 하였으며 산장에 추대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문집인 둔헌집에는 600여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가승에는. 산민육가가 수록되어 있다.

사위는 이득윤의 문인인 변시망이다. 이득윤은 현재 청주의 신행서원, 옥화서원, 구계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3. 청주사림의학맥과 서계와의관계

3.1 청주사림의 학맥

이득윤의 학문적 원연은 부친 이잠의 가학과 서기, 박지화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부친 이잠(1528~1575)은 일찍이 조실부모 하였으나 힘써 공부하여 39세에 진사가 되었다.

그러나 청주 벽서재로 은거하여 향리의 수재를 가르치는 것을 일삼았다 . 경사를 가르쳐서 날마다 고과하고 차례차례 법도가 있게 되자, 이에 원근의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인 자가 성대하였다.

당숙의 고규가 있어서 재목에 따라 성취한 자가 거의 백 여인 이었다. 이잠은 영송전 참봉과 동몽교관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잠의 문인은 이대수 .이대건. 홍순각 등 72명이며 왕래하며 강학한자는 김질중, 변경복, 신경행등 22인이다.

이들 문인들은 청주뿐만 아니라 제천, 보은, 목천, 서울 등 각처에서 모인 인물 들이었다. 이로 보건대 이잠은16~17세기 청주 사족의 학문에 큰 영향을 만나면서 비로소 유학이 정도임을 깨닫게 되었다.

홍천과 지리산, 계룡산근처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만 전념하였다. 약관의 나이 끼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서기(1523~1591)는 본관이 이천, 자는 대가, 호는. 와고 청초로, 구당이다 . 어려서 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제자백가는 물론 기술의 이론까지 통달 하였으며 선학을 좋아하였다.

서경덕, 이중호, 이지함에게 사사하였으며, 특히 이지함을 만나면서 비로소 유학이 정도임을 깨닫게 되었다. 홍천과 지리산, 계룡산근처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만 전념하였다.

약관의 나이를 넘긴 이득윤은 .서기가 공주에서 유학을 업으로 하고 학문에 독실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대학, 소학, 주역, 계몽 등 의 책으로 질의한다. 그리고 수년 뒤인 1578년 26세에 다시 찾아가 논란하니 서기가 놀라서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이름 난자가 그 대가 아니고 누구리오? 라고 하였다.

이득윤은 그의 나이 22세에 역학에 밝은 수 암 박지화(1513~1592)를 찾아가 평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 하였다. 박지화는 서경덕의 문하에서 예설과 주역을 배웠으며 특히 상수학에 몰두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미 문장과 조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청연(현 충청북도 청안)의 오속 촌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지화는 항상 사사로이 학자들 에게 말하기를 세간에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어찌 한정이 있으리오.

그렇지만 역학에 마음을 두고 두루 깨닫고 정미한 자는 이아무개만한 이가 없다. 고 칭찬 하였다. 이득윤이 역학에 정미하다는 박지화의 평가는 훗날 서계학문의 중심축이 역학에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 주게 하였다.

서계가 흠모 하였다는 고인 중에서 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령지업' 보다는 오로지 위기지학 만을 강조 하였던 주자의 주장대로 그 역시 평생토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에만 전심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령지업' 보다는 오로지 위기지학 만을 강조 하였던 주자의 주장대로 그 역시 평생토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에만 전심 한 것이다. 그런 그가 노모가 생존해 계신 까닭으로 잠시 뜻을 굽혀 1588년(선조 16) 36세의 늦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 하였으나, 이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한 효심에서 우려난 것 이었지 본인 스스로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평생 많은 관직이 주어졌으나 그때마다 사양 한 것은 그의 학문적 지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이다. 선조에게 올린 .권학잡.에서"학문의 요체는 방심을 거두는 것 이라고 피력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16세기 청주사족의 학맥은 한훤당 김굉필(1454-1504) 모재 김안국(1478~1543), 서봉 유우(1473~1537) 규암 송인수(1499- 1547), 동주 성제원(1506~1559) 모계 조강(1527~1599) 또는 화담 서경덕(1489~1546) 토정 이지함(1517~1578), 과 서기 (1523~1591), 수암 박지화(1513~1592), 화천당 박춘무, 서계 이득윤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학풍은 김굉필의 문인처럼 소학을 중시하고 향약의 실시와 서원의 건립 등을 통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데 적극 적 이었다. 또한 주역을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절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지함과 서경덕이 상수역, 술 수학에 깊은 이해를 가 지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병 활동을 한 박춘무 역시 침술에 뛰어나 등용 된바 있고, 이득윤은 역학에 정통하여 선조 대에 주역을 교정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다. 서계는 학문의 요체를 터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안으로는 덕성을 함양하는 근본으로는 소학을 읽어야 하고 밖으로는 격물치지를 위한 방법으로 사략 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두 방법 이야말로 취도에 있어 지름길 이라고 하였다.

"소학의 강조는 결국 주자가 주장하는 성리학적 세계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동시에 그 당시사림들의 공통된 지향이기 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이 밝히듯이 16세기 청주사족의 맥은 김굉필 이후 박

춘무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세계의 구현이 학문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3.2 서계이득윤과 청주지역의 사림

이득윤은 18세가 되던 해인1570년(선조3년)에 모계 조강(1527~1599), 진사 변경수와 함께 상의하여 신항 서원의 모태가 되는 유 정서원을 창건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득윤은 약관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청주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유정서원 창건에 함께 앞장선 조강과 변경수는 모두 이득윤과 공유한 인물로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이었다. 한양조씨는 기묘사화 이후 조강의 부친 조승윤 을 청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고, 안동김씨 밀양박씨등과 통혼 하면서 청주에서 점 차 유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초계변씨는 중종대 기묘사화이후변경수의부친인 변충남이 입향하여 안동김씨, 전의이씨, 경주이씨, 고령신씨, 은진송씨 등 청주 지역의 유력사족과 혼인하면서 정착하였다. 이득윤도 교육자로서 16세기 청주사족의 형성에기여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 보다도 교육에 힘을 쏟았다. 일찍이 진사에 입격한 이후로 다시 영달할 뜻이 없었으며 유학을 흥기 시키고 후생들을 가르치는 것 을 자신의 책무로 여겼다.

그리하여 서계의 풍문을 들은 원근의 선비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서계자신도 나이가 80세가 가까워옴에도 책 읽기 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괴산군수로 있을 때, 예는 도훈장을 정하여 학동을 가르 쳤다. 서원의 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그의 문하에 많은 선비들이 출입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 하였던 실천적 사 림으로써 17세기전반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서계의문인은 이유당 이덕수(1577~1645), 벽오 이시발(1569~1626), **홍석기**(1606~1680), 양일당 **신지익**(1588~1629), **오재 신지제**(1562~1624), 구암 한백겸(1552~1615),양서 이광윤(1564~?),송승길, 윤승임, 변시망, 변시익등 28명이다.

서계의 문인가운데 이덕수(李德洙.韓山人)와 이시발(李時發,이득윤의 제종손)은 서계 이후 청주사족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 한 대표적인 제자였다. **홍석기**는 민첩한 시작과 다양한 시체를 구성하여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신지익**은 효염으로 벼슬에 천거된바 있고 그의 정려한 일은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신지제는 창녕부사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을 토평,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던 인물이다 . "한백겸은 호조좌랑을 거쳐 형조좌랑, 청주목사를 지낸바 있으며 동국지리지 같은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저술을 펴낸 학자이다 .

이들 문인들은 다양한 관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시발, 김경익, 나만기, 나만중, 신간, 김극정, 지순해등 은 부친 이잡의 문인이기도 하며 **홍석기**는 이잡의 사위인 홍순 각의 손지이며, 이득윤의사위인 변시망은 변경수의 아우인 변경복의 손자가 된다.

또한 이덕수의 사위인 김익희(金益熙)는 김장생의 손자가 되며, 변경수, 조강, 변경복, 이득윤, 홍순각, 이덕수, 이시발 등은 신항 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16~17세기 청주지역을 이끈 하나의 중심축 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이득윤은 교육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 청주가 학문의 고장으로 주목 받게 된 데는, 낭성팔현(琅城八賢)'으로 불리는 학자들로부터 기인한다. 여기서 '낭성팔현'은 행정지역상 충청북도 청원군(현 통합청주시) 낭성면에 국한 시킨 것이 아니라 청주일대의 사림을 지칭한 말 이다. 이 말은 조강의 문집인 모계집에 실려 있는데, 이 문집은 조강의 13세 손인 조철형과 조병훈과 함께 1904년에 간행한 것이 다 .

모계집에서 언급한 낭성팔현은 박훈(1484-1540), 한충(1486-1521), 송인수(1499~1547), 조강(1527~1599), 정사호 (1553~1616), 이득윤(1553~1630) , 이덕수(1577~1645) , **홍석기**(1606~1680)를 일컫는다.

최근 "연구를 통하여 이른바 낭성팔현이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을 형성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 다. 청주지역의 사림은 적어도 신항서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16세기까지는 서인계열로 단정 할 수는 없으며, 여러 계열의 사 림들이 학문적 사승관계와 혼인관계로 연계되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득윤 자신도 서인계열의 기호학파보다는 영남사림을 지지했던 화담학파(花潭學派)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청주지역 에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 시킨 것은 바로 이득윤에게서 비롯된 것 이었다.

서계 이득윤과 기호학파와의 연관성은 그와 사계 김장생(1548~1631)과의 나누웠던 교유관계와 그의 문인이었던 이덕수 (1577~1645)의 사승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서계 이득윤은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사계 김장생과 서신교류를 통하 여 태극도와 역학 에 관한토론을 벌였다.

이득윤과 김장생이 나누었던 서신은 그들의 문집에 그 원문이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김장생이 역학에 대한 질문을 하 고 이득윤이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득윤과 김장생과의 학문적 교유관계가 이득윤의 문인이었던 이덕수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덕수가 김장생과 사우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보통 이덕수의 학맥을 이야기 할 때에 첫 번째 스승은 서계이득윤으로 일컬어진다. 이덕수가 정확히 언제 서계이득윤에게 수학 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청주지역에 세거한 재지사족 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년시절의 학문성숙기에서 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덕수는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위에 언급한 첫 번째 스승인 이득윤과 김장생의 교유관계 외에도 이덕수와 김장생의 인연은 집안 여러 형제들의 학연과 사계의 수제자인 우암 송시열과의 혼맥 등 매우 많다. 하지만 "1634년(인조12)에 함 께 연산현에 유배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산이씨 이덕수의 아버지 이도(李 濤)를 청주로 입향 한 후 청주지역의 유력 사족이었던 밀양박씨, 인천

채씨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청주에 정착 하였다. 호서사림의 영수로 정계를 주도한 우암 송시열은 이덕수의동생인 이덕사(李德泗)의 딸과 혼인하고 처가인 주성동 수릉재에서 이덕수에게 학문을 연마 하였다.

이러한 족적인 연결은 학문적으로도 이어져 이후 신항서원의 운영에 서인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시열이 신항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후 신항서원의 원장 직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독점하게 된다.

결국 이득윤은 조강 변경수와 함께 서원을 건립함으로써 서우원을 축으로하는 학연, 혈연, 지연의 단단한 향토사림의 유대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계이득윤과 기호학파와의 연관성은 그와 사계김장생과 나누웠던 교유관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기호학파의 대표적 성리학자 사계 김장생의 예학정신의 학풍을 공유한 서계선생 이후 사계의 수제자인 호서사림의 영수 우암송시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신항서원을 서계선생이 재지사족과 함께 건립하였지만 신항서원의 원장을 우암이 맡음으로서 이후 원장 직은 우암의 문인들이 독점함으로써 기반이 확고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3.3 서계 이득윤과 청주 지역의 서원

서계 이득윤은 1570년(선조 3)에 약관의 나이로 모계 조강, 진사 변경수와 함께 청주의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여 신항서원을 창건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삼았다. 신항서원은 청주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며 창건 당시에는 설립된 마을인 유정곡의 이름을 따서 유정서원 이라고 하였다.

창건 당시의 제향 인물은 성종 대에 효자로 이름난 경연(慶延, ?~1478), 기묘명현인 강박훈(1484~1540), 을사명현인 규암 송인수 (1499-1547) 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화를 입은 후 광해군대에 서원을 다시 세우면서 기묘명현인 김정(1486-1521)을 추 향하였고, 1632년(인조 10)에는 기묘명현인 송제 한충(1486~1521)을 추향하였다.

이들 배향인물들은 도학 정치를 추구하다 희생당했거나 효성이 지극하여 성리학적사회질서의 구현뿐만 아니라 유교적 교화와 실 천에 모범이 되는 인물들 이었다. 기묘사회에 피화된 김정과 한충을 추향한 것을 보면, 당시 서원건립의 의도를 잘 짐작할 수 있 겠다.

처음 창건시에는 사와 기본적인 교육시설 만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임진왜란으로 병화를 입은 후에 동서양재를 새로 건축함 으로서 서원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었던 것 같다. 신항서원은 초기에는 창건을 주도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서원의 원 장은 원사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대체로 남인계 서원은 향중인사가 선출 되었으며, 서인계서원은 향내를 벗어난 중앙정계의 고위관료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 해되고 있는데, 신항서원의 경우 두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초대원장은 조강과 함께 서원을 건립한 변경수 이고, 그 후 조강의 처가인 안동김씨의 김응생, 김계생과 변경수의동생 변경복, 창 건에 참여했던 이득윤등이 계속 원장을 지내며 서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초기

신항서원의 원장은 청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재지사족들이 담당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청주지역에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되는 것은 이득윤에서 비롯되었다. 이득윤은 광해군 때 옥화대에 은거하면서 김장생과 교류하였고, 이득윤과 김장생의 문인인 이유당 이덕수(1577~1645)가 원장을 지내면서 송시열(1607~1689)이 청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항서원의 원장은 대략 송시열과 통계 이수언(1636~1697)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 시기에는 청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설립자가문의 중심의 재지사족이 원장을 담당 하였다가, 청주의 명문거족이었던 한산이씨의 이덕수와와의 혼 인관계를 매개로 등장한 송시열이후의원장은 모두 송시열의 문인들이 독점하면서 재지사족은 철저히 배제 된다.

1650년(효종1)에는 천곡 송상현(1551~1592)과 함께 서계 이득윤이 추향하였다 . 이득윤이 배향된 이유는 학문에 있었던 것 같다. 이득윤은 역학에 능통하여 입사 하였고, 김장생과 주역을 논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청주지역에서 경주이씨 집안의 가지고 있던 영향력과 신항서원 창설의 공으로 배향된 측면이 더 컸다고 여겨진다.

즉 청주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송시열, 송준길 세력과 경주이씨를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과의 타협 속에서 배향 되었던 것 이라하겠다. 1656년(효종7)에는 목은 이색(1328~1396)과 율곡 이이(1536~1584)를 추향 하였다.

다음해인 1657년(효종 8)에 산에 송시열을 독향한 화양서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청주지역의 유일한 기호계서원으로 이이-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어나가는 학적 전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청주의 사람들이 신항서원을 '삼남제일'의 서원이라는 긍지를 갖게 했던 것이다. 현재 청주지역의 서원중에서 이득윤을 배향 하고 있는 서원은 신항서원, 옥화서원, 구계서원 등 총 3곳이다.

신항서원은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 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 청주시 미원면 옥화리에 위치한 옥화서원은 이득윤이 강학을 하였던 곳으로, 1717년(숙종 42)에 이득윤을 주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득윤외 에도 주일재 윤승임(1583~1688), 옥계 박근원(1477~1607), 사헌집의 둔암 윤사석(성종대)을 배향하고 있다. 매년 음력 3월 중 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위치한 구계서원은 1613년(광해군 5)에 현감 조인행과 신경행 등이 주축이 되어 충청좌도 청안현에 창 건한 서원이다. "이득윤외에도 악재 서사원(1550~1615),수암 박지화(1513~1592), 동고 이준경(1499~1572), 이당(1528 ~미 상)을 배향하고 있다. 매년 음력 3월 17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청주지역의 신항서원은 이득윤과 조 강, 변경수 등 3인이 시작하여 설립 하였지만 우암 송시열이 괴산에 독향한 화양서원 이전에는 삼남 제일의 100년간의 독보적 교육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암 송시열의 등장으로 재지사족이 원장을 역임 하다 가 송시열의 문인들이 독점하게 됨으로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조선중기를 지나면서 관학인 향교가 점차 교육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에 따라 사족들은 사숙인 서당과 서재에서 수학하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청주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가문이 바로 경주이씨 이잠(李潛), 이득윤의 집안이었던 것이다. 이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잠과 이득윤을 중심으로 한 경주이씨 집안은 16~17세기에 걸쳐 청주지역(在地士族)의 사림, 재지사족들의 교육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결국 신항서원의 창건으로 이어졌다.

서계 이득윤은 일찍이 부친인 섬계 이잠(剡溪 李潛)과 서기, 박지화에게 수학하였으며, 학문의 근본지향을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학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소학에 수록된 여씨향약을 보급하여 주자학적 세계를 구현하려 하였다.

더욱이 부친의 뒤를 이어 후생을 훈도하는 것을 자기의 책무로 삼아서 청주지역의 교육에 힘썼다. 이로써 보건대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하였던 실천적 사림으로써 17세기 전반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득윤은 문인 이덕수와 함께 낭성팔현의 일인으로 청주지역에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이 형성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신항서원을 창건한 주역으로써 청주지역에 기호학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사계 김장생과 학문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자신의 문인이었던 이덕수가 기호학파의 학맥과 연이 닿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은 비교적 쉽게 17세기 후반부터 청주지역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득윤과 조강, 변경수등 3인이 시작하여 설립한 청주지역의 신항서원은 재지사족이 원장을 역임하다가 송시열이 원장역임 이후 그의 문인들이 독점하게 됨으로서 서인계열의 부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득윤은 사계 김장생과의 학문적 교류를 함으로서 사계 김장생의 예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청주지역에 기호학파와 호서사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종관(Jong kwan Lee) [정회원] ✨2006년 6월 : 전 충청도청근무(서기관) ✨2006년 9월 : 녹조근정훈장 수상 ✨1996년 7월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2006년 2월 : 청주대학교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수료 ✨2014년 2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졸업(교육학박사) ✨2014년 7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재학

청야만집(靑野謾輯)

정의

고려 말부터 조선 숙종 때 까지의 야사를 뽑아 연대순으로 엮은 야사집.

내용

고려 말부터 조선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의 야사를 뽑아 연대순으로 엮은 책이다. 편찬자에 대하여는 이희수(李喜壽)설, 이성령(李星齡)설, 이희조(李喜祚)설 등도 있으나, <<매산문집 梅山文集>> 잡록이나 장서각 소장 <<청야만집>> 서문 끝에 밝히고 있는 이희겸(李喜謙)설이 여러모로 보아 타당하다.

이 책의 편찬 연대는, 장서각본 서문 끝에 '세재기미지동 기기용서 이희겸(歲在己未之冬棄棄翁書李喜謙)'이라 한 것으로 보아, 1739년(영조 15)으로 추측된다.

이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

① 25 책본 : 국립중앙도서관, ② 13 책본 : 조윤제(趙潤濟), ③ 10 권 10 책본 : 장서각·서울대학교·충남대학교·조수루(釣水樓)·국립중앙박물관·일본 동경대학·일본 가쿠슈인대학, ④ 9 책본 : 이대원(李大源)·일본 동경대학·일본 동양문고·일본 아가와(阿川), ⑤ 7 책본 : 중경문고(中京文庫), ⑥ 6 책본 : 이겸로(李謙魯), ⑦ 5 책본 : 일본 이마니시(今西竜), ⑧ 4 책본 : 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중앙공무원교육원·김근수(金根洙, 4 책 중 제 1 권·제 4 권 소장), ⑨ 3 책본 : 국립중앙도서관, ⑩ 1 책본 : 국사편찬위원회·김약슬(金約瑟)·전형필(全鑿弼), ⑪ 기타 : 경북대학교·일본 아사미(淺見備太郎)·일본 시대하라(幣原垣).

그 밖에 1916년에 조선연구회에서 원문과 일본어역을 대조하여 활자본으로 상·하 2 책을 펴낸 것도 있다. 이 책은 고려 말로부터 조선조 건국 이래의 공사(公私) 기록들을 역대 왕조의 편목(編目) 아래 인초(引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각 사건에 대하여는 그 표목(標目)을 표시하지 않고 대체로 한데 뭉뚱그려 기록하고 있다.

장서각본(10 권 10 책)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책머리의 서문에 이어(권 1) 고려 말 공민왕~조선 문종, ② 권 2 : 단종~연산군 초, ③ 권 3 : 연산군 말~중종, ④ 권 4 : 인종~선조, ⑤ 권 5 : 선조~동서분당~왜란, ⑥ 권 6 : 선조, ⑦ 권 7 : 임진왜란, ⑧ 권 8 : 시서의 변(矢書之變)~신지익(申之益)의 소(疏), ⑨ 권 9 : 의식(義拭)의 소~인조 원년 동지사 조엄(趙暉)의 시, ⑩ 권 10 : 하담록초(荷潭錄抄)~무진년 삼학사 중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 두 사람의 입사(立祠)를 청하였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의 계(啓) 등이다.

편찬/발간 경위

편찬 동기는, 그 서문에서 간흉(奸凶)의 접적(接跡)을 예방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제 나라 역사를 알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술 내용으로 미루어, 서인 내지 노론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려는 의도가 있었음도 분명하다.

의의와 평가

따라서 이 책은 남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남하정(南夏正)의 <<동소만록 桐巢漫錄>>과 더불어, 각각 양파를 대표하는 저술로서 중시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대체로 숙종 이후 조선 학계에서는 조선왕조를 대상으로 한 斷代史에 관심이 높아졌고, 당론서이지만 수준 높은 역사서도 등장했다. 『靑野謾集』 역시 이런 배경에서 편찬된 역사서로,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다른 역사서와 인용서목이나 체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독자적인 단대사이자 노론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한 당론서로서 자료 가치를 지닌다.

내용

또한 이 책에는 기술하는 도중 행을 바꾸어 한 자 낮추어 '謹案(근안)'이라 쓴 다음 편자 자신의 의견을 붙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인용서의 주기(注記)는 빠짐없이 붙이고 있다.

(申之益疏文)

申之益疏曰禁府王獄也非有關係宗社國家則不得囚於王獄臣不敢知言

054 左(원문:53a)

爾瞻之罪者有何關於宗社國家之罪而乃敢治之於王獄乎爾瞻於頃歲敢爲詐筭請 殿下勿與虜西謀和之論 殿下何嘗有一毫請和之意哉渠敢爲倡此說彰殿下惡名而傳播於中國也黃廷弼之奴事國人所知嚴鞫廷弼則直招必矣爾瞻慮有此患夜使人潛殺之結案捧招之時死已久矣不得使之着名仍摹手寸有若不識一字者之所爲乃敢上筭欺罔聖明日廷弼臨刑時大呼其妻欲掩其經斃之跡至於李偉卿之奴猝出土大夫之妻赤脫其裙襪古今所未有之變也我國之所以維持者以其貴賤名分之截然不可犯也微末儒生之有罪當執者亦使巫女探其家內不許雜人攔入所以種士族之規也 [주:上同]

(申之益)

合啓伏見 申之益 疏概以凶狡二字誣陷遠接使 李爾瞻 爾瞻 若見此疏大概
必待罪中路狼狽債事之患爲如何哉請治 申之益 以爲妖賊逞凶之計

055 右(원문:53b)

三審言不知何謀而况吾死汝死吾死等語實出於景禧之口而終始曲
護廢屈王章生而使不得正刑死而使不得延罪爾瞻之於景禧有何所容而
若是其曲庇耶自先陵來者皆曰益燁之構室也勒令齋即發陵軍及陵底居
民斫取陵材累百株諸陵推此可知方今經始兩宮一木直金湖閱役夫死傷
相踵以咫尺山陵斧斤不入今爲好聖之所竊構成蒼禍之窟穴樹木帶憎山
陵含悽過者流淚聞者嗚咽設使移長陵一抔土誰得以禁之哉鴨島一境
畿內名區祖宗朝屬之繕工而爾瞻乃敢以所竊逆人之物陰授公家之地飛
闕連官嗟占形勝營備傭賤結以爲官爵所謂先陵恭奉亦其一也臣父頃
在乙巳年中蒙恩爲齋郎情永慶當國遂乃長注不返入山杜門至今十四年
矣既老且病氣息僅存雖正臣罪勿令老父嗟之云々纓豐基人恭奉瑋
之子也初嘗出入賊臣之門累忝廢 大妃之謀其父大怒遂出之乃不得
已遂上此疏爾瞻曰之禁府度刑一次仍發瘡瘡死於獄中

明倫錄

申之益疏曰禁府王獄也非有關係宗社國家則不得囚於王獄臣不敢知言

宿曠之罪者有何關於宗社國家之罪而乃敢治之於王獄乎百曠於頃歲敢
密諫劾請 殿下勿與虜酋謀和之論 殿下何嘗有一毫請和之意我渠
敢為倡此說彰 殿下惡名而傳播於中國也黃廷弼之奴事國人所知嚴
翰廷弼則直括必矣百曠慮有此患夜使人潛殺之結案捧招之時死已久
矣不得使之着名仍摹手寸有若不識一字者之所為乃敢上劄欺罔聖明曰
廷弼臨刑時大呼其妻欲掩其徑斃之跡至於李偉卿之奴捧出士大夫之
妻未脫其裙襪古今所未有之變也我國之所以維持者以其貴賤名分之截
然不可犯也微末儒生之有罪當執者亦使巫女探其家內不許雜人攔入所
以重士族之規也同上

合啓伏見申之益疏緊以凶狡二字誣陷遠接使李百曠百曠若見此疏大駭
必待罪中路艱阻債事之慮為如何於請治申之益疏以為妖賊送凶之計